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655-01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서울생활안내



CONTENTS

출입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7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08
비자	08
체류	08
외국인등록	09
재외동포	12
출국	13
Q&A	14

주거



주거 종류	16
임대차 계약	16
이사	17
전기·가스·수도	18
쓰레기 처리	19
Q&A	25

교통



교통카드	28
지하철	30
시내버스	31
택시	33
자전거	34
고속버스	36
기차 및 비행기	37
유실물 찾는 법	37
Q&A	38

교육



교육제도	40
교육기관	40
한국어 교육	44
Q&A	46

의료



한국의 의료체계	48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51
건강보험제도	56
Q&A	58

취업 및 노무



외국인의 취업활동	60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60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62
노동법	63
4대 사회보험	6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64
취업 및 고용사이트	65
Q&A	66



운전



운전면허	68
교통사고	73
자동차등록 및 말소	74
렌터카 및 카셰어링	77
오토바이	78
Q&A	79

통신 및 금융



통신서비스	81
금융서비스	84
Q&A	87

여가 생활



서울의 공원	89
스포츠 시설	91
문화재 및 문화시설	91
서울 관광	97
서울의 전통시장	97
나라별 마트	99
자원봉사 활동	100
Q&A	100

행정



국제결혼	102
국제이혼	104
출생 및 사망신고	104
인감	105
세금	105
금연정책	107
반려동물	108
법과 질서	108
Q&A	110

DIRECTORY



병원	112
보건소	113
도서관	115
은행	116
재한 외국문화원	116
지하철 노선도	117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118
각국 주한 대사관	120
구청 정보	125
생활 유용 연락처	126
긴급 연락처	127



서울생활안내 출입국



- 0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03 비자
- 04 체류
- 05 외국인등록
- 06 재외동포
- 07 출국
- + Q&A

0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행정 및 생활 관련 다국어 종합민원 상담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무엇인가요?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 상담서비스이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번없이 1345
해외 이용 시 82-1345
82-2-6908-1345-6



팩스 1577-1346
02-2650-4550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주간(09:00~18:00)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 야간(18:00~22:00)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언어로 상담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우루두어 (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라어(스리랑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 결혼이민자, 체류외국인 누구나 출입국업무 전 분야(체류, 국적, 투자, 비자업무 등) 및 국내 생활의 전반적인 민원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01 출입국

0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접수를 하려면 해당 거주지의 관할 구역을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관할 구역

-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용산,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경기도(안양, 과천, 성남, 하남)
-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은평, 종로, 중구, 성북,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 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경기도(광명)

03 비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는 취업, 여행, 학업 등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증은 여권에 부착해야 한다. 사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1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총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2 비자발급 받는 법

■ 신청 및 발급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에서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사증 발급신청번호)를 발급한다.

■ 제출 서류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자세한 정보는 www.hikorea.go.kr에서 확인)

■ 사증발급 수수료 :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90달러이다.

04 체류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방문예약(필수) 등을 할 수 있다.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체류 연장허가의 경우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취소는 방문 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



1 체류기간

단기체류 : 90일 이하 / 장기체류 : 91일 이상 / 영주 :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초기 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는 초기 입국 외국인들의 원활한 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 대상자 :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교육시간 : 2~3시간
- 강의언어 :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영어/러시아어/일본어/몽골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태국어/프랑스어/인도네시아/네팔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대상자 : 이민자 및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기초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100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 ⇨ 5단계 과정으로 기본 50시간, 심화 20시간

3 기타 안내

구분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현재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체류하다가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	신청 대상자는 체류 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할 외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	

*취업활동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존 체류 자격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사전 허가 또는 추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기간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05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자와 그 가족(A-1, A-2, A-3)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외교, 산업, 국방 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2 등록기간

-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허가받는 즉시

3 등록절차 및 등록증 수령 방법

외국인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cm×4.5cm),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 수수료 3만원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 거주지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는 비자 종류마다 다르다.
- 등록증 수령은 신청장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데 약 4주가 걸린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4 각종 신고의무

외국인에게는 각종 신고의무가 있다.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인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방법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되었거나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의 소속단체 혹은 단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 상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 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주 신고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대표는 다음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예) 고용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명칭 변경, 고용주 혹은 근무처 소재지 변경,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파견사업장 변경)한 경우, 고용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

등록사항 변경, 체류기간 연장, 거주지 변경 등은 유학생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다.

- **신고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 분야는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취업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분야,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이 허용된다.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간 허가한다. 자세한 정보는 (p62)참조

■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반납사유

- 등록 외국인이 최종 출국 시
-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할 때

• 반납시기

- 완전 출국하는 자는 출국 시
-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 등록 외국인이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단서,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처리증명서를 같이 제출

■ 결핵검사 의무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1, A-2, A-3 체류자격 및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면제다.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결핵 고위험 국가

- ①네팔 ②동티모르 ③러시아 ④말레이시아 ⑤몽골 ⑥미얀마 ⑦방글라데시 ⑧베트남 ⑨스리랑카 ⑩우즈베키스탄
⑪인도 ⑫인도네시아 ⑬중국 ⑭캄보디아 ⑮키르기스스탄 ⑯태국 ⑰파키스탄 ⑱필리핀 ⑳라오스

06 재외동포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는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거소신고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거소신고는 선택사항이지만 신고한 자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유지되며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기 때문에 금융 및 부동산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하다.

2 신고기간

-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즉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3 국내거소신고 혜택

- 국내거소신고 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거소증이 발급된다. 국내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처럼 사용 가능하다.
-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부동산 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 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 동안에는 재입국 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 국내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4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당사자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 신고한다.

공통 제출서류		거소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 X 4.5cm)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제외) • 거주국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 체류자격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 1. 10 이후 폐쇄된 경우)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 1. 10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발급)

※심사과정에서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출서류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5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소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신 거소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거소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이전신고서, 거소 이전 입증서류

6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재외동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거소신고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할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07 출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 용의자의 경우 억류되거나 강제 출국 당할 수 있으며, 부여된 체류기간 후에 출국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출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거주 및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강제퇴거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 경과 후 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1비자는 일률적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확인 필요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출국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 만료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필요서류는 30일 이내 출국하는 유효한 항공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만료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출국기간 만료 후 공항에서 출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 2일 전에 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받은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D-6(종교비자) 체류자격의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따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나 학교,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사회봉사활동(비영리, 무상) 차원의 회화지도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활동보다 회화지도활동을 주로 하거나 외국어학원의 강사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D-6 비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재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받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은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생활안내

주거



- 01 주거 종류
- 02 임대차 계약
- 03 이사
- 04 전기·가스·수도
- 05 쓰레기 처리
- + Q&A

01 주거 종류



1 아파트

각각 독립된 가구가 모여 있는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 내에 편의시설, 상가,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한다. 매달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2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Officetel)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가구 및 가전 등이 빌트인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공용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관리비를 낸다.

3 단독주택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단독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1인 또는 2인(공동 명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연립·다세대주택

서양식 맨션 형태인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뜻한다.

5 원룸

원룸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형태지만 크기가 작다. 구조에 따라 주방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뉜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6 하숙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안에 주거비, 공과금, 아침 및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공동 공간으로 쓰인다. 집주인이 상주해 있으며 주로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7 고시원

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1인 기준이며 생활공간이 비좁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하다. 밥, 계란, 김치 등 기본 재료를 제공한다.

02 임대차 계약



1 전세(보증금제도)

- 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1~2년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는 제도다.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한다.
- 입주자는 임차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입주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2 월세

- 월세란 1~2년의 임대차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사용료(월세)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보통 다달이 내는 월세의 10~20배 정도이다.

-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입주 시, 잔액을 완납한다. 단,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월세 또는 공과금이 밀리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주거형태, 면적,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어 가능 부동산(주로 영, 중, 일) 리스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이사



1 이사 시 주의사항

- 입주 전, 먼저 새로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삿짐을 풀기 전에 증거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사할 때 챙길 것!

공과금·관리비 납부확인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만일을 위해 영수증을 챙겨두자.

ARS 문의

- 도시가스 1588-5788
- 상하수도 120
- 전기요금 123

2 이사 방법

- **콜밴이사** :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일반이사** : 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된다.
- **포장이사** :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이삿짐의 규모,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 등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TIP.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거주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 집주인의 경우, 현 세입자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공지하고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TIP. 기타 이사 서비스

-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잠시 이삿짐을 보관해야 할 경우,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삿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관 일수에 따라 보관료가 책정된다.
- 새집 입주 전 청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 '입주청소'나 '이사청소'를 검색하면 된다.

04 전기·가스·수도

**1 전기**

- 가정용 전기의 기준 전압은 220V/60Hz이다. 해외에서 가져온 전기제품 사용 시 전압과 주파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매월 사용한 전기료는 다음달 고지서에 부과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 전기요금, 납부, 가입, 고장신고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한, 영, 중, 프, 스킨]를 이용한다.

2 가스

- 서울은 도시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설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LPG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한다. LPG가스 사용 주택의 경우, 주거지 근처 가스 공급회사에 연락하면 가스를 배달해준다.
- 이사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거주 지역별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방문 희망일에 맞춰 담당자가 방문해 설치해준다.
- 가스 설치 및 철거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의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한다.
- 거주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정보는 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수도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청구된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종 관련 정보는 상수도사업본부(☎120, arisu.seoul.go.kr) [한,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는 법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사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헝겊이나 수건으로 채운 뒤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보온을 유지한다. 또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아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한다.

05 쓰레기 처리



1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는 PET, 종이, 비닐, 캔 등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 수거하는 제도다. 분리수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판매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 별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지정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구분	종류	배출일자 및 시간	배출장소	수수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일반)	생활쓰레기 닭, 소와 같은 가축 뼈, 조개 껍질, 마늘 및 양파 껍질, 1회용 티백 등 	배출일자 자치구마다 다름 배출시간 일몰 시부터 자정까지	일반주택 대문 앞 또는 배출 지정 장소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음식물)	식품쓰레기 및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지정 수거 요일 저녁 10시까지	단독주택 및 20세대 이하 주택 전용배출용기(25L)에 넣어 배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120L)에 넣어 배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월 관리비에 합산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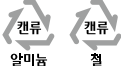
※ 종량제봉투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자치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TIP.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 과 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 살구, 복숭아, 감 등의 씨
- 육 류 : 동물의 뼈, 깃털
- 해산물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바닷가재 등의 껍질 / 복어내장(알)
- 기 타 : 티백, 허브약초 분말, 양파 껍질, 고추장 같은 자극성 물질

4 재활용 쓰레기

■ 품목별 재활용 쓰레기 분류

구분	재활용 가능 (O)	재활용 불가능 (X)
종이류	신문지, 책, 공책, 종이포장지, 골판지, 종이가방, 종이상자, 종이나 종이팩 표시가 있는 것 	비닐 코팅된 종이가방이나 종이컵
유리류	맥주·소주병 등 각종 술병, 탄산음료병, 유리 표시가 있는 것 	판유리, 거울, 내열 처리된 식기, 유백색(우유빛) 유리
고철류	음료수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식기, 공구, 철 또는 알루미늄 표시가 있는 것 	페인트통, 기름통 또는 유해물 포장용기
스티로폼	가전제품 등의 충격 완화를 위한 포장용기, 생선이나 과일 운반을 위한 용기, 깨끗한 컵라면 용기	일회용 접시
플라스틱	HDPE, LDPE, PP, PS, PVC, OTHER 표시가 있는 것 	필기구, 단추 소켓, 장난감, 유아용 보행기, 전자기, 일회용 카메라, 전기난로
우유팩	우유팩	
형광등	깨지지 않은 형광등, 전구	깨진 형광등, 전구
비닐봉투	비닐봉투(흰색, 검은색 등, 라면봉지) HDPE, LDPE, PP, PS, PVC, OTHER 표시가 있는 것 	오염된 비닐봉투

※폐전지는 지하철 역사, 동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지정 장소에 분리배출

■ 배출방법

- 폐지,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류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정돈한 후 한꺼번에 문전 배출한다.
- 비닐류는 쓰레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비닐 봉투에 담거나 묶는 등 깨끗이 정돈해 배출한다.
- 각 자치구마다 수거요일이 다르므로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숙지하여 해당 배출 시간(일몰 이후 ~ 자정까지)에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PET병 등)



불에 안타는 쓰레기
(깨진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병류



종이류
(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캔·고철류



스티로폼 비닐류
(리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배출장소

개인주택의 경우 대문 앞이나 배출 지정 장소에, 아파트는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 재활용센터 및 베품시장

구분	운영방식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재활용센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중고제품을 사고 파는 곳	양천구 www.ycrc.co.kr 도봉구 02-902-8272 서대문구 www.s8272.co.kr 금천관악구 www.jungo7282.co.kr 동대문구 www.d8272.co.kr
구세군 희망나눔미	개인이나 기업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저가에 재판매	www.nanumistore.org [한, 영] 기증 및 후원 문의 ☎ 02-365-7084 / 1588-1327
아름다운가게	새 물건이나 중고 물건을 기증받아 수리한 후 저가에 재판매	www.beautifulstore.org [한, 영] ☎ 02-3676-1009 / 1577-1113
외국인벼룩시장	외국인들이 판매자로 참가하는 벼룩시장	http://global.seoul.go.kr [한, 영, 중] ☎ 02-2075-4180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장터 • 7호선 독섬유원지역 2·3번 출구	www.ilea1004.com [한, 영] ☎ 02-1899-1017
서울풍물시장	전통적인 풍물거리와 청계천이 조화를 이뤄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 • 1·2호선 신설동역 9번 출구 100m 전방	www.pungmul.or.kr [한, 영, 일, 중]
이태원 중고가구 거리	외국인이 사용한 중고가구를 저가에 구매 가능 • 6호선 이태원역 3·4번 출구 사이에 위치	

5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를 일컫는다.

구분	대상품목
가구류	장롱, 장식장, 책상, 서랍장, 책장, 침대, 소파, 싱크대 등
원형 훼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원형 보존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1m 이상 폐가전제품

※다리미, 청소기와 같은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이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배출하거나, 위 표의 대상 품목 배출 시 함께 배출 가능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방법

•인터넷 신고



※배출신고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관할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고



•인터넷 신고

폐기전 수거예약센터에서는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기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폐기전 수거예약센터 : ☎ 1599-0903(www.15990903.or.kr)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운영시간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1월 1일, 공휴일

무상 방문수거 절차 >>



•배출방법

구청장이 발행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대형폐기물 처리요금

각 자치구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를 경우 무단 투기로 간주하여 수거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시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소형폐기물

- 폐 휴대폰이나 다리미, 청소기 등 소형가전 33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폐 소형가전은 거주지의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하면 된다.
- 폐 휴대폰은 판매대리점이나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수거함(Green Box)에 넣으면 된다.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각 구청 및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체류지 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1백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월세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임대금액 산정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 액수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백만원(월세)×100+3백만원(보증금)=1억 3백만원(임대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0.3%이므로 중개수수료는 30만 9천원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나요?**



특별히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례상 집주인과 협의 하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때 주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 반환시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을 참고하세요.

**고용계약이 끝나 잠깐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
그동안 이삿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역 이삿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 짐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물품 운반에 필요한 트럭 대여 서비스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보관료는 6~8만원(2.5m×2.5m)이며, 트럭 대여 서비스는 이동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차 주택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세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우선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이 외에도 수거량이 많은 곳에는 개별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위치는 각 주민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요령에 맞추어 쓰레기를 버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봉투를 열어 흘트려 놓은 것 같은데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된 경우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나요?



누군가 일부러 쓰레기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흘트려 놓았거나, 고양이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신고되는 경우, 지역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시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책상유리가 깨져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깨진 유리의 양이 적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단, 위험하므로 반드시 신문지 등으로 두껍게 싸서 버려야 합니다. 만약 양이 매우 많다면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폐기물용 쓰레기 자루를 구매한 후 유리를 잘게 부수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맞지 않는 옷을 기증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헌옷 수거함을 이용할 경우

개인주택의 경우 골목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함 옆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이용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은 지역 자치구에서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지역복지단체를 이용할 경우

아동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센터가 있으니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 바랍니다.

■ 기부단체를 이용할 경우

거주지 근처에 기부 가능한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서울생활안내

교통



01 교통카드

02 지하철

03 시내버스

04 택시

05 자전거

06 고속버스

07 기차 및 비행기

08 유실물 찾는 법

+ Q&A

01 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가 있다.

1 이용방법

교통카드 종류는 Tmoney(티머니)와 Cash-bee(캐시비)가 있으며,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지하철 역사 내(1~9호선), 티머니 온라인숍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카드 판매가격은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 4천원~8천원 선이다. 카드 잔액이 250원 이상 남아 있어야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Tmoney 홈페이지 : www.t-money.co.kr ※Cash-bee 홈페이지 : www.cashbee.co.kr

■ 충전 및 이용방법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은 지하철역 내에 있으며 외국어 선택이 가능하다.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단말기의 '카드 대는 곳'에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삐' 소리와 함께 해당 요금이 빠져나간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두 사람 이상 탑승할 경우, 운전자에게 탑승 인원을 말하고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된다.



■ 1회용 교통카드

- 서울지하철은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 가능하다.
- 1회용 교통카드구매 시 이용 운임과 카드 보증금 500원을 함께 지불해야 하며, 사용 후 각 역마다 설치된 '보증금 환급기'에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운임은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씩 추가되며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 1회용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1회용 교통카드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재사용을 위해 보증금(500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2. 승차 및 하차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곳(T-money)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3. 보증금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 디자인

■앞 면



■뒷 면



2 환승

하차 또는 환승 시 반드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환승 할인 적용 및 이용요금 처리가 된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하차 또는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교통카드의 경우, '전철-버스 간' '버스-버스 간' 1일 4회(전체 교통편 이용횟수 5회)까지 환승된다.

버스 환승 이용 시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 (서울광역, 경기좌석/직행, 인천좌석/광역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으로 적용
	추가요금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가산 (서울광역, 경기좌석/직행, 인천좌석/광역버스는 30km 초과 시)

- 적용대상 :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지하철 간 환승할 경우
- 환승 이용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익일 7시까지)은 1시간) 이내이다.
-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 시 같은 번호의 버스에 연속 승차할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02 지하철



1 지하철 요금체계

지하철 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요금 결제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일반 교통카드로 가능하다. 어른을 기준으로 10km 이내는 1,250원, 10~50km 사이는 5km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교통카드 사용 시).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에 100원 추가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시설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분	교통카드 (AM, 06:30전 조조할인 적용)	교통카드	현금요금, 1회용 교통카드
일반	1,000원	1,250원	1,350원
청소년(만13~18세 미만)	580원	720원	1,350원
어린이(만6세~12세 미만)	360원	450원	450원

※만6세 이상 노인, 장애인(중증장애인 1~3급은 동반 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등 별도 지정자 및 만6세 미만(보호자 1명 당 동반 3인까지만)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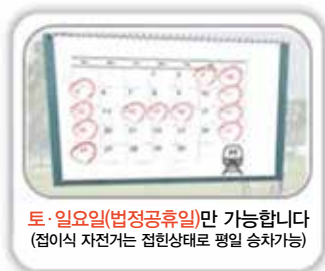
■ 정기승차권(정기권)

지하철로만 출퇴근하는 경우, 정기권 사용이 유리할 수 있다. 정기권은 지하철 역무실에서 구입 가능하며 최초 구입 시 카드비용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기권	서울전용 (55,000원 권)	구입일로부터 30일 간 60회까지 사용 ※서울지하철 1~9호선 및 한국철도공사 서울 시내 구간만 사용
	거리비례용 (55,000원~102,900원 권)	광역·수도권전철 전구간에서 거리 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정기권은 지하철(광역·수도권전철 전구간)에서만 사용 가능

2 자전거 휴대 승차

자전거를 휴대해 지하철에 승차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해진 규칙과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 또는 서울자전거홈페이지(<http://bik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토·일요일(법정공휴일)만 가능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한상태로 평일 승차가능)



맨 앞칸과 맨 뒤칸만 가능합니다
(자전거전용칸이 설치된 전동차도 있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마세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

03 시내버스



1 버스 종류

■ 일반버스

서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버스로 노랑(순환버스),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색으로 구분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빨간색이다. 버스노선 검색이나 서울버리지도 등의 정보는 서울대중교통 홈페이지(<http://bu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착예정 버스는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도착안내 단말기에 표시된다.

BLUE BUS

파랑색 간선버스



서울시내 먼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입니다

GREEN BUS

초록색 지선버스



간선버스, 지하철로 연계 및
지역내 통행을 위한 지선버스입니다.

YELLOW BUS

노랑색 순환버스



도심과 부도심 내에서 단거리 운행하는
순환버스입니다

RED BUS

빨강색 광역버스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입니다

■ 마을버스

노선이 짧은 지역버스로 전철이나 일반버스 운행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행한다.



■ 심야버스(올빼미버스)

자정(밤12시)부터 새벽 4시(출발지 기준)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서울 시내 총 9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버스 앞면과 옆면 LED 전광판에 노선번호와 함께 올빼미 캐릭터가 표시돼 있어 '올빼미버스'라고 불리며 번호 앞에 밤을 뜻하는 N(Night)을 붙여 'N버스'로도 불린다.



▶ 다양한 브랜드 캐릭터



▶ 올빼미 버스 정차안내(정류소)



▶ 버스내부 노선도



▶ 버스외부 LED 표출 모습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

2 버스요금

버스요금은 버스종류별, 승차 대상으로 다르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일반요금		조조할인요금 (첫차~AM. 06:30, 카드이용 시)
		카드요금	현금요금	카드요금
간선버스 지선버스	일반	1,200원	1,300원	96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360원
광역버스	일반	2,300원	2,400원	1,84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1,09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960원
순환버스	일반	1,100원	1,200원	880원
	청소년	560원	800원	450원
	어린이	350원	350원	280원

구분		일반요금		조조할인요금 (첫차~AM. 06:30, 카드이용 시)
		카드요금	현금요금	카드요금
심야버스	일반	2,150원	2,250원	-
	청소년	1,360원	1,800원	-
	어린이	1,200원	1,200원	-
마을버스	일반	900원	1,000원	720원
	청소년	480원	550원	380원
	어린이	300원	300원	240원

※광역버스의 기본거리는 30km로 이용거리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부모가 동반하는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TIP.

모바일 앱 '서울대중교통', '네이버지도'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울시 대중교통정보 사이트(<http://m.bus.go.kr>)에 들어가면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및 지하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04 택시



1 택시 종류

■ 일반택시

일반택시는 보통 주황색, 은색, 흰색 차량이며 기본요금은 처음 2km에 3,000원, 이후 142m당 100원씩이 추가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총 요금에 20%가 추가되는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콜택시 '1333'번으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콜택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



■ 모범택시

모범택시는 검정색 차량으로 일반택시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택시 무사고 1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에게 모범택시 운전 자격이 부여된다. 기본요금은 처음 3km에 5,000원으로 164m당 200원이 추가로 부가되며 차량에 '모범 또는 모범택시'라고 표기되어 있다.



■ 대형택시

6~9인 승용(운전자 포함) 검정색 택시이다. 운전자들은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용문의 ☎1644-2255

인터넷셔날택시 홈페이지 www.intltaxi.co.kr [한, 영, 일, 중]



■ 콜밴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택시이다. 콜밴은 용달화물차의 운송업이고 밴처럼 생긴 대형택시는 왜건(Wagon)택시의 운수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장애인콜택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신청접수(예약)는 전화나 문자(☎1588-4388)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5km 1,500원, 10km까지 2,900원, 10km 초과 시 70원/km이다. 기타 이용정보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calltaxi.sisul.or.kr)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대리운전 서비스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차량 주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리운전의 피크타임은 21:00~01:00로 이용방법은 포털 검색 또는 '대리운전' 앱을 검색·설치하면 된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다르다.

05 자전거



1 이용방법

-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다. 만15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만19세 미만은 부모님의 가입 동의가 필요하다.
- 자전거 대여 방법은 서울자전거 홈페이지(bike.seoul.go.kr)나 '서울자전거 따릉이'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권 구매 절차를 거치면 된다. 비회원은 일일권 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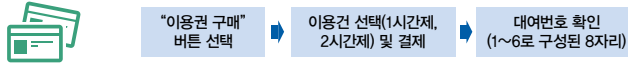
■대여 및 반납방법

- 자전거는 대여한 곳에 꼭 반납할 필요 없이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 가능하다.
- 2017년 8월 현재, 총 444개의 대여소가 서울시 각 자치구에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자전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대여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원등록

- 홈페이지나 앱에서 '나의 공간→회원카드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 Tmoney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회원등록이 완료된다.
- 후불교통카드나 RFID칩이 내장된 카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앱에서 대여할 자전거를 선택하고 '회원카드 등록' 탭을 선택한다. 단말기의 홈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회원카드를 대주십시오'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등록이 완료된다.

① 이용권 구매(PC, 모바일에서 따릉이 홈페이지 www.bikeseoul.com 접속)



② 자전거 선택 후 대여번호 입력(단말기 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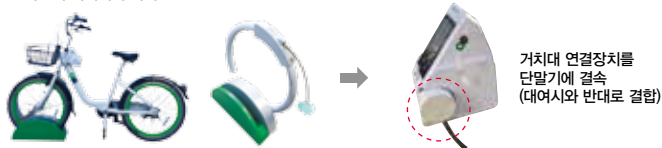


③ 대여 - 단말기 잠금장치 분리



④ 반납 - 따릉이 대여소는 어디나 반납 가능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



2 요금체계

구분	정가권	일일권(회원)	일일권(비회원)
상품	• 7일권 : 3,000원 • 30일권 : 5,000원 • 180일권 : 15,000원 • 365일권 : 30,000원 *1시간 기준	• 일반권(1시간) : 1,000원 • 프리미엄권(2시간) : 2,000원	• 일반권(1시간) : 1,000원 • 프리미엄권(2시간) : 2,000원
결제	휴대폰, 신용카드, 모바일 티머니		휴대폰, 신용카드
추가요금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 추가	• 일반권 :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씩 추가 • 프리미엄권 : 2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씩 추가	
이용시간	• 기본대여시간 : 일반권 - 60분 / 프리미엄권 - 120분 • 기본대여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부과(추가 요금 미납 시 재대여 불가) • 대여시간에서 일반권 4시간, 프리미엄권 6시간 초과 시 도난 또는 분실로 간주함		

06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국내 지방 도시로 여행 시 KTX나 비행기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다양한 노선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다. 서울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이렇게 4개의 터미널이 있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위치(www.external.co.kr)
- **동서울종합터미널** :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위치(www.ti21.co.kr)
- **남서울남부터미널**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위치(www.nambuterminal.com)
- **상봉시외버스터미널** : 지하철 7호선·중앙선·경춘선 상봉역에 위치(www.sbtr.co.kr)



• 예약 및 승차권 구매

고속버스통합예매 사이트(www.kobus.co.kr) [한, 영, 중, 일]를 이용하면 터미널 안내, 버스 운행 정보 및 운행시간은 물론 티켓예약까지 nons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출발 2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관련 앱 정보는 www.epassmobile.co.kr를 참조하면 된다. 승차권은 각 고속터미널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07 기차 및 비행기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 시 고속버스 외에도 기차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1 기차

기차 승차권은 코레일 승차권 예매사이트(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승차권 자동발매기, 기차역(전철역 제외), 여행사 등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취소 및 반환수수료 안내, 승차권 이용 안내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한, 영, 중, 일]를 참조하면 된다.

종류	특징
KTX	국내 기차 중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ITX-새마을	특별급행 등급 열차이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된다.
SRT	수서역에서 탑승하는 고속열차로,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으로 나누어 운행한다.
무궁화	국내 기차 중에서 가장 느리다. KTX나 새마을호가 정차하지 않는 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2 비행기

국내선은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co.kr/gimpo) [한, 영, 일, 중]에서 운행 비행 편과 공항정보 확인 및 항공권예약을 할 수 있다.

08 유실물 찾는 법



1 지하철에서 분실 시

지하철에는 구간 별로 지정 유실물센터가 있다. 물품 분실 시 이용한 지하철 정보(노선, 시간, 열차번호)를 알면 찾기 편리하다. 지하철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은 07:00~22:00이다.

■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

☎1577-1234 /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 이용정보 → 유실물센터)

■ 지하철역 내 지하철 유실물 센터



2 시내버스에서 분실 시

-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센터
☎02-415-4101~8 / 홈페이지(www.sbus.or.kr → 유실물센터)

3 택시에서 분실 시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544-7771 / 홈페이지(www.spta.or.kr → 조합고객만족센터 → 분실물 등록)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02-2033-9200 / 홈페이지(www.stj.or.kr → 고객센터 → 유실물센터)

4 기차에서 분실 시

- 레츠코레일 ☎1544-7788, 1588-7788 /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 고객센터 → 유실물)

5 유실물 통합포털 안내

-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 ☎120 / 홈페이지(www.seoul.go.kr/v2012/find.html?SSid=560_10)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182 / 홈페이지(www.lost112.go.kr)

**외국인들이 이용 가능한 콜택시가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외국어 [영, 중, 일] 서비스가 가능한 운전자 및 상담원을 365일 24시간 배치하여 거주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콜택시(www.intltaxi.co.kr) 서비스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의 VIP의전, 공항 픽업 서비스, 맞춤형 관광, 쇼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금은 미터 요금제, 구간 요금제가 있으며 Tmoney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용 Tmoney 교통카드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Tmoney 카드는 어린이용(만6세~12세), 청소년용(만13~18세), 일반용(19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편의점(GS25, CU, 7-ELEVEN, Ministop 등), 지하철역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비자 외국인이나 관광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카드 사용 도중 13세 생년월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서울생활안내

교육



01 교육제도

02 교육기관

03 한국어 교육

+ Q&A

01 교육제도



한국은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까지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과정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고등학교(3년) 과정부터는 학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대학교는 2~3년제인 전문대 과정 및 4년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심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여타의 특수학교·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가 작은 가지로 분포되어 있다. 그 위의 고등교육기관 또한 대학(교), 대학원 과정과 함께 전문대학·교육대학·전문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과정으로는 유치원 교육이 있다.

■ 한국의 교육과정



02 교육기관



1 한국 학교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녀도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가 미흡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존재하며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제외한 수업료가 무료이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훨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입학자격에 관한 상세정보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 서울교육콜센터 02-1396 ■ 서울시교육청 <http://sen.go.kr>

2 외국인 교육기관

■ 국제유치원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Early Childhood Learning Center	용산구 장문로6길 12	☎02-795-8418 www.eclseooul.com [영]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용산구 한남대로 90	☎02-798-2195 www.ffkseooul.com [영]
BLK Hannam	용산구 독서당로 124-1	☎02-790-9025 www.englishedseooul.com/ [영]
남산국제유치원(NIK)	중구 다산로8길 8-6	☎02-2232-2451~2 www.seoulforeign.org/page.cfm?p=1929 [영]

■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자녀,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외국인학교는 보통 일반학교보다 학비가 비싸다. 최소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입학할 수 있다.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국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 ※각 학교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한국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니 미리 본국에서 구비해 오는 것이 좋다.
입학시험	학교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인터뷰와 함께 별도 자체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리스트(소재지 별)

학교명	소재지	개설과정	연락처
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2길 35	유/초	02-776-1688 www.hanxiao.or.kr [중]
하비에르국제학교	종로구 비봉길 23	초/중/고	02-396-7688 http://xavier.sc.kr [한, 영, 불]
서울독일학교	용산구 독서당로 123-6	유/초/중/고	02-792-0797 www.dsseoul.org [독]
지구촌가독외국인학교	용산구 독서당로 115	유/초/중/고	02-797-0234 www.gcfskorea.org [영]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 이태원로 285	유/초/중/고	02-797-5104 www.yisseoul.org [영]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57	유/초/중/고	02-907-2747 www.apis.seoul.kr [영]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자양로 35길 13	유/초/중/고	02-2201-7091 www.kkts.org [영]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로 1길 1	초/중/고	02-3437-7078 www.mongolschool.org [한]
서울프랑스학교	서초구 서래로 7	유/초/중/고	02-535-1158 www.lfseoul.org [불]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 남부순환로 364길 7-16	초/중	02-571-2917~8 http://koreaforeign.org [영]

학교명	소재지	개설과정	연락처
dulwich칼리지서울 영국학교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6	유/초	02-3015-8500 www.dulwich-seoul.kr [영]
한국외국인학교 (서울캠퍼스)	강남구 개포로 408	유/초	02-3496-0510 www.kisseoul.org [영]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9	초	02-2678-5939 http://yongxiao.kr [중]
서울 외국인학교 (SFS)	서대문구 연희로 22길 39	유/초/중/고	02-330-3100 www.seoulforeign.org [영]
한국한성학교 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로 176	중/고	02-335-7027 http://scs.or.kr [중]
서울일본인학교	마포구 월드컵북로 62길 11	유/초/중	02-572-7011 www.sjs.or.kr [일]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마포구 월드컵북로 62길 21	유/초/중/고	02-6920-8600 www.dwight.or.kr [영]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에서 각 학교별 입학절차, 학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교육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달단계, 다문화적 요소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대문구 한천로6길 21	02-2212-8456, 9356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	02-835-0796
서울영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시흥대로173길 14	02-834-3041
신일유치원	중구 동호로10길 27	02-2234-4006, 3938
양문유치원	동작구 시흥대로 644-1	02-834-6864
한일유치원	중구 퇴계로 88다길 5	02-2235-0016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모든 학생(일반 및 다문화)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학교이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초등학교	서울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070-8689-3791
	서울대동초등학교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	070-8644-8504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14	02-853-2407
	서울용암초등학교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39	02-796-2167
	서울충무초등학교	중구 퇴계로50길 13	02-2279-0010
	서울문창초등학교	동작구 신대방2길 14	02-836-2031
	서울경수초등학교	성동구 뚝섬로13길 22	02-498-5123
	서울장안초등학교	광진구 군자로 74	02-469-5264
	서울수유초등학교	강북구 삼양로74길 39	02-989-3724
	지구촌학교	구로구 오리로 1189	02-6910-1004
중학교	선정중학교	은평구 서오릉로20길 19	02-3156-1400
	구로중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02-864-4232
	대림중학교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02-845-2171
	서울오산중학교	용산구 보광로7길	02-799-9400
	다에다문화학교	강남구 언주로 615	02-3445-5045
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은평구 서오릉로20길 19	02-3156-1500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070-8685-7798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용산구 화나무로12길 27	02-798-3641

■ 다문화 예비학교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거주지 지역 예비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적응교육을 이수한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www.nime.or.kr)에서 다양한 다문화 통계자료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초등학교	서울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070-8689-3791
	서울광희초등학교	중구 다산로 269	02-2238-8455
	서울대동초등학교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	070-8644-8504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14	02-853-2407
	서울문창초등학교	동작구 신대방2길 14	02-836-2031
	서울영일초등학교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18	02-861-0426
	서울용암초등학교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39	02-796-2167
	서울충무초등학교	중구 퇴계로50길 13	02-2279-0010
	지구촌학교	구로구 오리로 1189	02-6910-1004

교육과정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중학교	구로중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02-864-4232
	대림중학교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02-845-2171
	다애다문화학교	강남구 언주로 615	02-3445-5045
고등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070-8685-7798

■ 위탁형 대안학교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7년 현재 서울시에는 40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 그 중 아래 학교에서 다문화학생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학교명	소재지	연락처
초·중학교	지구촌학교	구로구 오리로 1189	02-6910-1004
중학교	다애다문화학교	강남구 언주로 615	02-3445-5045

4 홈스쿨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학교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비한국계 부모들은 홈스쿨링 커뮤니티(www.homeschool.com)나 미국원거리 교육연합(www.usdla.org) 등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3 한국어 교육



1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원

대학부설 전문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명	연락처	홈페이지
고려대 한국어센터	02-3290-2971	http://klcc.korea.ac.kr [한,영,중,일]
건국대 한국어교육부	02-450-3075~6	http://kfli.konkuk.ac.kr [한,영,중,일]
경희대 국제교육원	02-961-0081~2	http://www.iie.ac.kr [한,영]
동국대 국제어학원	02-2260-3471~2	http://interlang.dongguk.edu [한,영,중,일]
숙명여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	02-710-9165	http://lingua.sookmyung.ac.kr [한,영,중]
숭실대 국제처	02-820-0784	http://study.ssu.ac.kr/web/study [한,영,중]
성균여학원 한국어학당	02-760-1345	http://koreansli.skku.edu [한,영,중,일]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02-705-8088~9	http://klec.sogang.ac.kr [한,영,중,일]
서울대 언어교육원	02-880-8570, 5488	http://lei.snu.ac.kr [한,영,중,일]
연세대 한국어학당	02-2123-3465, 8550~1, 8553	http://www.yskli.com [한,영,중,일]

학교명	연락처	홈페이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02-3277-6958	http://elc.ewha.ac.kr [한,영,중,일]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02-2173-2260	http://www.korean.ac.kr [한,영,중,일]
한양대 국제교육원	02-2220-1663,5	http://iie.hanyang.ac.kr [한,영,중,일]
한성대 언어교육센터	02-760-4374	http://hansung.ac.kr/~language [한,중]

2 무료 한국어 교실

외국인주민을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와 같은 외국인 지원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글로벌센터(3곳) 및 글로벌빌리지센터(7곳),

외국인근로자센터(6곳)

☎ 02-2075-4180

<http://global.seoul.go.kr> [한, 영, 중, 일]



글로벌센터

3 국제교류자원봉사망

국제교류자원봉사망은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 02-2151-6507

<http://volunteer.kf.or.kr> [한]



4 무료 온라인 한국어 학습기관

학교명	홈페이지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opencourse/koreanlecture/list.do [한, 영, 중, 일, 불, 태국,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
고려사이버대학교	http://korean.cuk.edu [한, 영, 중, 일, 스페인]
EBS 두리안	http://www.ebs.co.kr/durian/kr/course [한, 영, 중, 일, 스페인, 베트남]
코리아타임스 한국어 어학당	http://ktband.co.kr [한, 영, 중, 일,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5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의 한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유학, 취업 등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http://topik.go.kr>

- **시험일정** : 연간 6회(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 **시험등급 및 수준**
 - 평가등급 : 6개 등급(1~6급)
 - 시험수준 : TOPIK I(1~2급), TOPIK II(3~6급)
- **시험접수** : 시험일정안내 및 시험접수는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참조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정규 과정을 수료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학제도가 있나요?



많은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성적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의 30~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청인원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전용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있나요?



현재 국제화에 관심 있는 대학들은 전체 강좌 중 30% 정도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영어전용 강좌 비율은 대학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국제학부를 설치하여 전 강좌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생활안내

의료



- 01 한국의 의료체계
- 02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 03 건강보험제도
- + Q&A

01 한국의 의료체계



1 의료체계

한국의 의료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종류	의원, 보건소  (*사진출처 : 서초구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사진출처 : 백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진출처 : 강북삼성병원)
치료 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해당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건강검진센터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종합병원인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된다.
-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에 한한다.

2 진료기관 이용방법

■ 1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접수·수납 창구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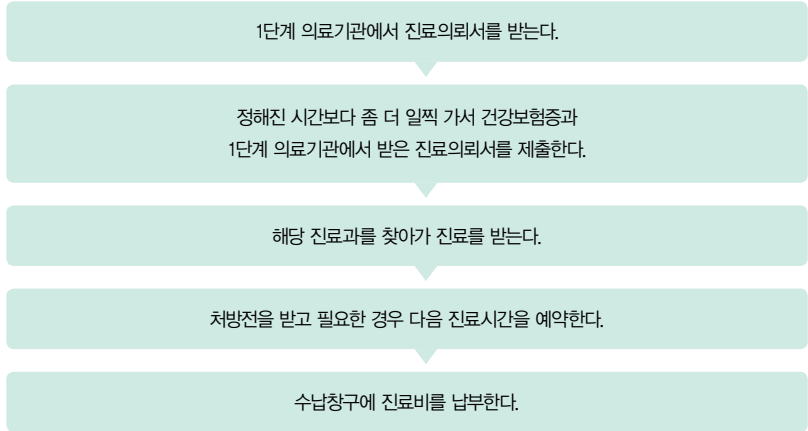
이름을 부르면 진찰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아픈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한다.

의사의 지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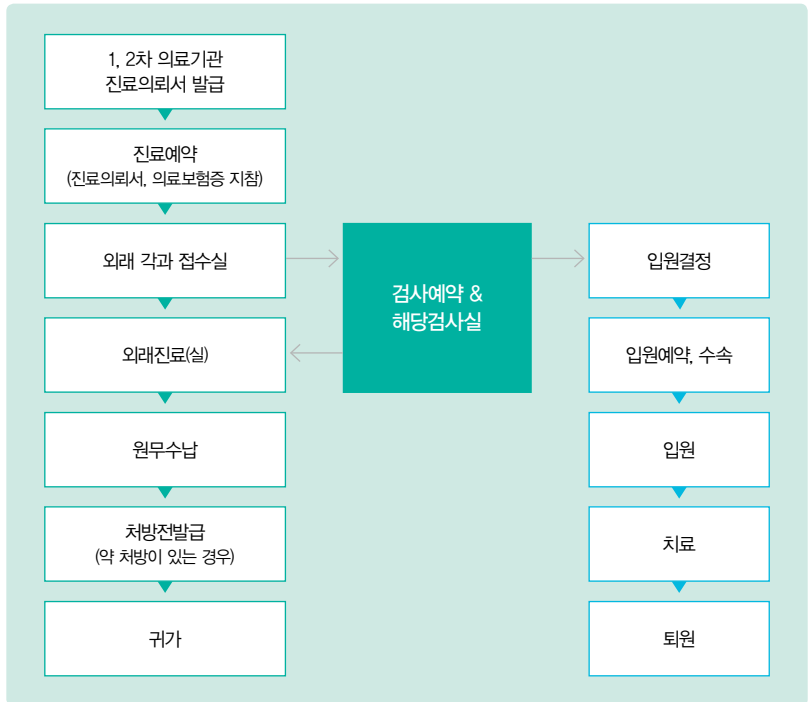
진찰 후 진료비를 지불하고 처방전을 받는다.

병원 근처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산다.

■ 2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 3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3 기타 진료기관 및 의약품 구입처

■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각 구에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 서비스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 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예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태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 서비스 종류

-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 파악)
-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재가장애인 재활 및 생애주기별(신생아·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건강문제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실시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사진출처 : 강남구보건소)

■ 한방병원

동양의학은 침술과 한방약을 포함하여 서양의학과 차이가 있다. 동양의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며, 원기회복이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외국인 대상 진료 가능한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다.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주 소 :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30

토요일 오전 9:00~오전 12:00

연 락 처 : ☎02-958-9988, www.khmc.or.kr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자생한방병원

주 소 : 강남구 언주로 858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6:00

연 락 처 : ☎1577-0007, www.jaseng.co.kr



자생한방병원

■ 약국

주변에서 '약', '약국'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병원 처방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건강음료, 종합감기약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약국

자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약품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미리 알려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한다. 입국 전 복용하는 조제약을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휴일지킴이약국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다. 대신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운영날짜, 운영시간, 소재지 등 자세한 정보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 [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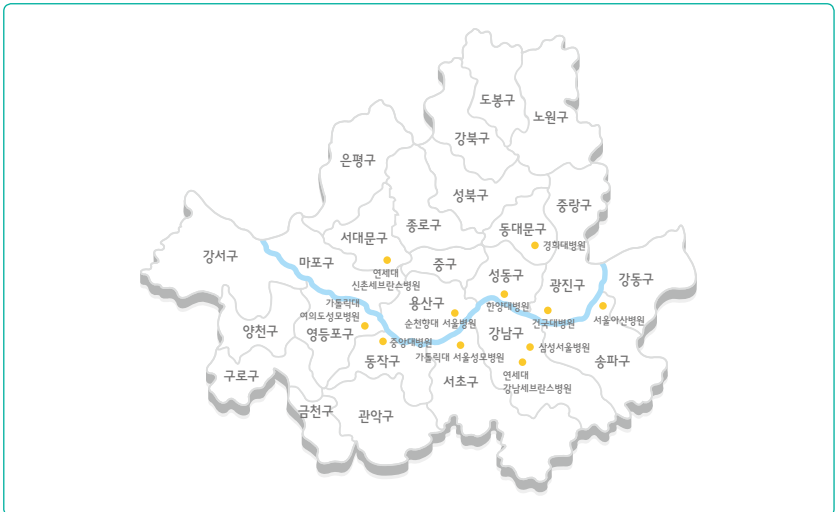
4 의료비 부담

대부분의 병원은 신용카드로 의료비 납부가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은 각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한다. 간혹 납부처가 분리된 병원에서는 국제진료소에서 따로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요청 시 영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다.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병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선납 후 보험금 지급 요청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02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1 국제진료센터



병원명	소재지	진료시간	연락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 63로10	월~금 오전 8:00~오후 5:00	02-3779-2212 www.cmcseoul.or.kr/global/eng/ front [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대로 222	월~금 오전 8:00~오후 5:00 토 오전 9:00~오전 12:00	02-2258-5745 www.cmcseoul.or.kr/examination [한,영,중,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월~금 오전 8:30~오후 5:30	02-2228-5800, 5810 http://sev.iseverance.com [한,영,중,일,러]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강남구 연주로 211	월~금 오전 8:30~오후 5:30	02-2019-3600, 3690 www.yuhs.or.kr/en/gan_index.asp [한,영,중,일,러]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월~금 오전 8:30~오후 5:30	02-3010-5001 www.amc.seoul.kr [한,영,중,일,러]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월~금 오전 8:00~오후 5:00 토 오전 8:00~오전 12:00	02-3410-0200, 0226 www.samsunghospital.com [한,영,중,일,러]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월~금 오전 8:30~오후 5:30	02-2290-9553 [영] / 9579 [러] 010-6402-9550 [영] / 010-6403-9550 [러] 응급 02-2290-8283 https://seoul.hyumc.com/seoul/ international.do [한,영,중,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용산구 대사관로 59	월~금 오전 9:00~오후 5:00 토 오전 9:00~오전 12:00	02-709-9158/9058 응급 02-709-9119 www.schmc.ac.kr/seoul/international /index.do [한,영,중,스페인]
경희대학교병원	동대문구 경희대로 28	월~금 오전 9:00 ~ 오후 5:00 토 오전 9:00~오전 12:00	02-958-9644/9477 www.khmc.or.kr/eng [한,영,중,러]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월~금 오전 9:00~오후 4:30 토 오전 9:00~오전 12:00	02-6299-3025 응급 02-6299-1339 [한,중,일] http://ch.cauhs.or.kr [한,중,영,러,몽골어]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월~금 오전 9:00~오후 5:00	02-2030-8361 www.kuh.ac.kr/english [한,중,영,일,러, 몽골어]

2 진료과별 전문병원

지정분야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관절	부민병원	강서구 공향대로 389	1577-7582 http://bumin.co.kr/seoul [한,중,영,러]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왕산로 259	02-966-1616 http://sshosp.co.kr [한]
	목동힘찬병원	양천구 신목로 120	1899-2221 http://himchanhospital.com [한,중,영,러]
뇌혈관	명지성모병원	영등포구 도림로156	1899-1475 www.myongji-sm.co.kr [한,중,영]
대장·항문	대항병원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1	02-6388-8114 www.daehang.com [한,중,영,러,몽골어]
	한솔병원	송파구 송파대로 445	02-2147-6000 www.hansolh.com [한,중,영,일,러]
	서울송도병원	중구 다산로 78	02-2231-0900 www.isongdo.com [한]
척추	우리들병원 (강남)	강남구 학동로 445	1688-0088 www.wooridul.co.kr [한]
	나누리병원	강남구 언주로 731	02-3446-9797 www.nanoori.co.kr [한,중,영,일,러,몽골어]
	더조은병원	강남구 논현로 705	1588-0852 http://joen4u.com [한]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강서구 하늘길 70	02-2660-7000 http://seoul.wooridul.co.kr [한]
	서울척병원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1599-0033 http://seoul.chukhospital.com [한]
화상	베스티안병원	강남구 도곡로 429	02-3452-7575 www.bestianseoul.com [한,중,영]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02-2639-5114 http://hangang.hallym.or.kr [한,중,영,일,러]

지정분야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산부인과	강서미즈메디병원	강서구 강서로 295	1588-2701 www.mizmedi.com [한,중,영,러,몽골어]
	유광사여성병원	강서구 강서로194	1588-3006 www.yookwangsa.co.kr [한]
	인정병원	은평구 응암로 164	02-309-0909 http://injunghp.co.kr [한]
	의료법인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중구 서애로1길 17	02-2000-7114 www.cheilmc.co.kr [한,중,영,일,러,몽골어]
안과	누네안과병원	강남구 선릉로 404	1661-1175 www.noon.co.kr [한]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강서구 등촌로 181	02-2650-0700 www.siloam.co.kr [한,영]
	의료법인건강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영등포구 영신로 136	1577-2639 www.kimeye.com [한,중,영,일]
외과	민병원	강북구 도봉로 187	1899-7529 www.minhospital.co.kr [한]
이비인후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강남구 역삼로 245	02-6925-1111 www.hanaent.co.kr [한,중,영,일,러,몽골어]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재활병원	강북구 삼각산로 58	02-901-1700 www.nrc.go.kr [한,영]
	명지춘혜병원	영등포구 대림로 223	02-3284-7777 www.mjchoonhey.co.kr [한]
	서울재활병원	은평구 갈현로11길 30	02-6020-3000 www.seoulrh.com [한,영]
한방(중풍)	의료법인 동서한방병원	서대문구 성산로 365-14	02-320-7810 www.dsosh.co.kr [한]
한방(척추)	자생한방병원	강남구 언주로 858	1577-0007 www.jaseng.co.kr [한]
	모커리한방병원	강남구 도곡로216	1577-2575 www.mokhuri.com [한]

■응급상황 지원센터

•119안전신고센터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한다. 119구조대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구급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이 119에 전화하면 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결되어 3자 통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번호 없이 119를 누르고, 공중전화에서 119를 사용할 때에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후 119를 누른다. 24시간 온라인응급구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국, 영문 가능)하여 팩스(1544-9119)로 신청하거나 문자메시지 '119'로 신청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119 홈페이지(www.119.go.kr [한])에서 확인 가능하다.

※ 119구급차가 아닌 의료기관 및 병원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는 거리별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 시에는 요금이 가산되며, 밤 12시~새벽 4시까지에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상담진행 및 의료기관 안내를 비롯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 연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577-7129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인터내셔널 SOS

인터내셔널 SOS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의학전문가가 24시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응급 상황 시 구조, 대피, 본국 송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3140-1700(24시간), www.internationalsos.co.kr [영]

3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사항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지원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 관할 부서에 제출한다.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4 기타 의료 서비스기관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협력하여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 주 소 :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3층
-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00
- 연 락 처 : ☎02-2002-8683~4 / <http://hncenter.or.kr> [한, 영]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의료소외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내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 등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 소 : 영등포구 도신로 40
- 진료시간 : 진료과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 참고
- 연 락 처

내과·재활의학과·치과·한방 ☎02-2632-9933

대사증후군 ☎02-2670-4756, 02-2670-4912~4

www.swsgc.co.kr [한, 영, 중, 일,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03 건강보험제도



한국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보유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1 건강보험의 종류와 가입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직장보험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D-3), 방문취업(H-2) 등의 경우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예정자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보험

구분	내용
적용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2019. 1. 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 2014.12.17~2018.12.17 까지 입국자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결혼이민 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 2018.12.18. 이후 입국자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결혼이민 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다만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제출처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북부,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 등 8개 지사는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신청절차	• 본인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지참 즉시처리 • 가족등재 및 위임 신청 시 구비 서류 확인 필요 •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 한국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로서 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병원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발생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르다).

2 체류자격별 보험료 부과방법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 부과기준 : 보수월액×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월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세대 ⇒ 평균보험료 부과
- 종교인(D-6)인 경우 보험료의 30% 경감

■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부과기준 :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보험료
- 부과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동반(F-3)
- 유학생(D-2), 일반연수(D-4)인 경우 50% 경감

TIP.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서울에는 총 30개의 국민건강보험 관할지사가 있다. 해당 거주지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 연락처 : ☎1577-1000 (영어상담 033-811-2000) www.nhis.or.kr [한, 중, 영, 일, 베트남]



외국인도 치과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충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과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등 포함, 임플란트)'은 보험급여 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전 처치 등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내 사보험회사에서 치과 상품만을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개설되었으니 자세한 상품소개는 사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있나요?



서울에는 최신 진단 및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 그와 수준이 비슷한 개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동물병원의 위치는 동물병원 EYO 홈페이지(<http://animalmedical.eyo.co.kr> [한])나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vma.or.kr/search/list.asp> [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BBB코리아 대표전화

1588-5644

언어별 내선번호를 누르세요.

영어	1	이탈리아어	6	폴란드어	11	인도네시아	16
일본어	2	러시아어	7	터키어	12	몽골어	17
중국어	3	독일어	8	스웨덴어	13	인도어(힌디어)	18
프랑스어	4	포르투갈어	9	태국어	14	말레이시아어	19
스페인어	5	아랍어	10	베트남어	15	스와힐리어	20

서울생활안내

취업 및 노무



- 01 외국인의 취업활동
- 02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 03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 04 노동법
- 05 4대 사회보험
- 0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 07 취업 및 고용사이트
- + Q&A



01 외국인의 취업활동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취업할 수 없는 자격'으로 나뉜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02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1 단기취업(C-4)

활동기간 90일 이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다.

2 전문기술(E-1~7)

-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2 비자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자기건강 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마약류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거주(F-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등은 취업할 수 있다.

4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사행 행위를 제외한 취업 활동이 3년간 허용된다.

5 영주(F-5)

국내 취업 활동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관광취업(H-1)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협정상의 체류기간까지이다.

7 비전문취업(E-9)

-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3년의 취업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단,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자).
-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 ① 사용자가 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②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근무 중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정해진 경우
- ④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⑤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는 전 사업장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신청해야 하며,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한다.

-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을 변경한 사유가 '휴·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8 방문취업(H-2)

- 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로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단,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03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시간제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대상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자로 유학생 담당자 혹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자 (어학연수생 : 청소년 불가, 자격변경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자)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 주당 10시간~20시간 이내 - 학부과정 : 주당 10시간~20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 주당 15시간~30시간 이내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참고
허용분야 및 제한분야	- 허용분야 -통·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의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제한분야 -모든 제조업 및 건설업 -첨단연구소, 사해 행위 영업 장소, 유흥접객업 등
장소변경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15일 이내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장소 등 변경 신고)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 평균 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 - 어학연수 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 - 시간제 취업 조건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신고자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 시간제 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학교에서 발급)

※ 허가처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한다.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방문동거(F-1), 동반(F-3)

위 자격 소지자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E-1)~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할 수 있다.

04 노동법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한, 영])에서 얻을 수 있다.

1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이다.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하루 2시간, 1주간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연장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2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지급)이며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지급일자 전 미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미수령 임금은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휴가

- 1년 이상 근무,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달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 업무상의 부상, 병으로 인한 휴업, 산전·산후휴가, 유산·사상휴가로 쓴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 여성 노동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05 4대 사회보험



- 외국인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필수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는 필수 적용 대상이며 일부는 임의 가입 대상인 경우가 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0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1 서울글로벌센터

- 평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02-2075-4180

2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일시 보호를 위한 단기 쉼터와 상담, 교육, 문화 등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칭	연락처	홈페이지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478-2555 02-478-0126	www.welfarecenter.or.kr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02-868-5208	www.gmwc.or.kr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2282-7974	www.smwc.or.kr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02-911-2884	www.sbmwc.or.kr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02-2643-0808	www.shinmok.or.kr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02-388-6343	www.emwc.or.kr

3 고용노동부

- 임금 체납, 부당 해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 고용노동부 FAQ : <https://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외국어상담 5번)

4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장소

장소	상담일시	연락처
중국동포사랑의집	둘째주 일요일 14:00~17:00	02-872-9290
조계사	셋째주 일요일 14:00~17:00	02-768-8524
서울조선족교회	넷째주 일요일 14:00~17:00	02-857-7257



사립대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다른 사립대학교로 이직 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사립대학교 교직원 대상 연금제도인 사학연금(개인 부담 8.5%, 법인 5.0%, 국가 3.5%)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퇴직할 때 퇴직 급여를 신청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퇴직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직하여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사학연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전 연금을 포함하여 누적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20년 이상 사학연금을 냈다면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입한 연금액 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사학연금) ☎1588-4110, 02-769-4000, www.tp.or.k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사학연금) ☎1588-4110, 02-769-4000, www.tp.or.kr

원어민 강사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나요?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시 수급권을 갖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최초 2년에 대해 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그 기간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 강사로 9개월째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에 10일의 무급 휴가만이 보장되어 있는데
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법적으로 9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조항과 상관없이, 신청인은 9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고 이에 대해 고용주는 9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생활안내

운전



01 운전면허

02 교통사고

03 자동차등록 및 말소

04 렌터카 및 카셰어링

05 오토바이

+ Q&A

01 운전면허

**1 운전면허 신규 취득**

한국 국내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단계별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총 3개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 면허종별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 교육장' 또는 자동차전문학원 같은 교통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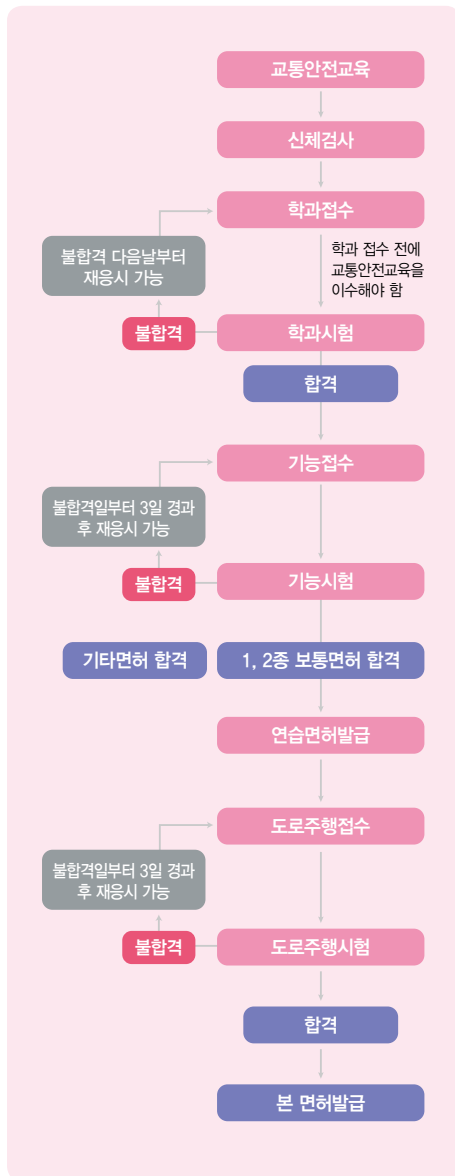
-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 교육내용
시정각 교육
- 준비물
수수료 무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신체검사

-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
1종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학과시험

- 준비물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4.5cm(3×4cm가능) 3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수수료 : 1·2종 보통 7,500원, 원동기 5,000원, 2종 소형 7,500원
-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는행 중 40문제 출제
-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기능접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수수료 : 1·2종 보통 18,500원,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연습면허발급

- 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허가해 주는 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수수료 : 3,500원

■도로주행접수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과 응시교시를 지정 받는다.
-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수수료 : 도로주행 25,000원

■운전면허학원

- 한국의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대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면허시험 응시자가 필기시험,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

■운전면허시험장

서울에는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총 4곳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시험장명	소재지	연락처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1577-1120 http://dl.koroad.or.kr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동일로 1449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TIP.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 경향청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는 동대문, 마포, 영등포, 광진, 관악, 강서, 송파, 도봉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글로벌센터 :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한, 영,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 제네바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비엔나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국가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만기 시 한국 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한 국가

아시아 (24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홍콩, 마카오
미주 (19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유럽 (46개국)	교황청, 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 (4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케냐,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라이베리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쿠웨이트

※중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협약국이 아니지만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하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지 외국인은 신체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한다.
- 반납한 면허증은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된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 필기시험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 가능하다.

•면허 교환 구비서류

외국인 · 외국시민권자	내국인 · 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 7,500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시스템으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영주권, 비자 불인정 • 주민등록증 원본(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수수료 : 7,500원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아시아 (27개국)	뉴질랜드, 네팔, 대만,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 인도(뭄바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쿡아일랜드, 키르기스스탄 ,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미주 (21개국)	파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구아스칼리엔테스주, 과나후아토주, 게레로주, 톨락스칼라주),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과바부터,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우루과이,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 콜롬비아,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유럽 (34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아르빌), 이란 , 이스라엘 ,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9개국)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표기국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임(23개국)

※오스트리아는 1997. 1. 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리투아니아의 A, A1, B1, C, C1, C1E, CE, D, D1, D1E, DE중 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불가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3 법규위반 시 벌점 항목

법규위반 시 정지처분 기준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1-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100점
2. 속도위반(60km/h 초과)	60점
3.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3-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3-3.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40점
4.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3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40점
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지운전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7.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8.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9-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30점
1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2.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3. 신호·지시 위반	
14. 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4-2. 속도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15.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를 추락 방지 위반	15점
16.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6-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6-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7.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법규위반 시 정지처분 기준	벌점
18.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19.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0.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1.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22. 앞지르기 방법 위반	
23.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24.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25. 안전운전 의무 위반	
26.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하는 행위	
27. 돌 · 유리병 · 쇠파스,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2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02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운전자 및 동승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후 사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 시 조치 ·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 색상 등 사고 특징을 112에 신고해야 함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발화 가능한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를 금함

2 교통사고 벌점항목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점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2.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같은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 자전거 교통사고

-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03 자동차등록 및 말소



1 신규등록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신규등록을 대행할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한])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복사본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신조차 또는 수입차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 자동차 확인 검사증 또는 자동차 안전 검사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 위 서류와 동일, 말소사실증명서 1부, 신규검사증명서

2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한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수인 이전등록 기간

항목	시간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한])에서 신청
※매매업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을 기재하고,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
 -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전,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자동차가 세금이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변경등록

■ 신청방법 및 기간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한])에서 신청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차주도장날인), 차주신분증사본

4 이사물품의 일부로 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의 일부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다.

■ 인정기준 및 방법

- 세관에서 이사물품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승용자동차만 가능하다.
- 소형 자동차나 세단은 가능하나 트럭이나 트레일러 주택, 10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들여올 수 없다.
-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며 이사가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가능하다.
-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증명서 및 보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동차 검사 및 배기 검사 관련 정보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 www.ts2020.kr [한, 영]), 배기 및 소음 관련 정보는 교통환경연구소(☎032-560-7114 www.nier.go.kr [한,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자동차 보험가입

-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http://kpub.knia.or.kr> [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자동차 정기검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방법

- 승용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시행(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름)
- 검사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과태료 :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에 1만원 씩 추가(최대 30만원)
- 해당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 가능

7 폐차 처리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폐차장 위치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www.kasa.or.kr [한,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3일 안에 발급받은 차량등록원부 사본
- 인감도장이 찍힌 소유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폐차절차



※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04 렌터카 및 카셰어링



1 렌터카

렌터카(Rent-a-car)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한국 렌터카 회사들은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차를 빌려준다

■렌터카 임차 기준

-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
 - 유효한 운전면허증(한국/국제) 소유자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시

■렌터카 회사

회사명	연락처
AJ렌터카	☎1544-1600, www.ajrentacar.co.kr [한,영]
롯데렌터카	☎1588-1230, www.lotterentacar.net [한,영]
식스트 렌터카	☎1588-3373, www.sixt.co.kr [한,영]

※통합 포털 검색창에 '렌터카'나 '렌터카회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요금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비교·검토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카셰어링

카셰어링(Car Sharing)은 차량을 대여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렌터카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운영방식

- 렌터카와 달리 회원에게만 대여한다.
- 렌터카는 주로 일 단위로 대여계약을 맺고 반납에 한해 시간 단위 요금을 부여한다. 반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 카셰어링 회사

회사 명	연락처
그린카	☎080-2000-3000, www.greencar.co.kr [한]
쏘카	☎1661-3315, www.socar.kr [한]
제로카	☎1661-4448, http://zerocar.socar.kr [한]

05 오토바이



오토바이(Motorcycle)는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서울 시내의 혼잡한 도로에서 몰고 다니기 용이하다. 영업용으로는 주로 택배, 퀵서비스, 음식점 배달 등에 오토바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통학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다. 대다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제성과 편의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토바이

1 면허취득

오토바이 종류	운전면허
배기량 125cc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2종 소형면허
배기량 125cc 이하	1·2종 보통면허
스쿠터	1·2종 보통면허

※ 2종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2 등록 및 보험

- 오토바이 등록: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 창구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이륜자동차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험가입: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았습니.
잠시 중국에 갈 일이 있어 반납한 중국운전면허증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이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은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유효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때, 출국계획을 증명하는 항공권 또는 선박권,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로 검출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00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생활안내

통신 및 금융



01 통신서비스

02 금융서비스

+ Q&A

01 통신서비스



1 전화

■유선전화

휴대전화와 달리 '통신선'으로 연결된 전화를 말한다. KT(☎100, www.kt.com), SK 브로드밴드(☎106, www.skbbroadband.com) 등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가입비, 설치비는 상품마다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유선전화 상품 가입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개통방법

대표적인 통신사로 SK텔레콤 [한, 영], KT Olleh [한, 영], LG U+가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구비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통 약정기간이 2년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요금의 경우 계약 시 선불제 및 후불제를 선택할 수 있다.

TIP. 대표 통신사



휴대폰 개통에 제한은 없으나 비자 유형에 따라 단말기 구입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휴대폰 개통 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080-816-2000, 080-011-6000, www.tworld.co.kr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114(휴대폰), 국번없이 100, www.kt.com



체류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 있으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1년 또는 2년 사용 약정을 맺어야 한다. 요금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지로(GIRO), CD/ATM,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14(휴대폰), 국번없이 101, www.uplus.co.kr

2 인터넷

■ 초고속 인터넷

- 개통방법 : Olleh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대표적인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다. 가입 상담번호로 전화하거나 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설치 신청을 하면 서비스 기사가 직접 방문한다. 초기 설치비용이 들며 사용료는 통신회사 및 선택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이용요금 : 보통 사용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로 약정한다.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가 할인되며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할인 요금을 전액 위약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 약정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모뎀, AP 등의 장비 임대료도 유상으로 전환되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 업체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Olleh KT	www.kt.com	일반전화 : ☎100(무료) → #2(영어상담) 휴대전화 : 지역번호+100(유료) [영, 중, 일] 1588-8448
SK브로드밴드	www.skbroadband.com	☎106 / 010-8282-106 [영, 중, 일] 개별 요청 가능
LG U+	www.uplus.co.kr	☎101 [영] 개별 요청 가능

■ 휴대용 와이파이

휴대용 와이파이 기계를 휴대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T, KT, LG U+를 방문하여 개통할 수 있으며 보통 2년 약정으로 계약한다.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인터넷 카페

PC방이라고도 한다. 시간당 또는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온라인 게임, 인터넷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부분 24시간 영업으로 시간당 요금은 약 1,000~2,000원이다. 간단한 간식도 판매하고 있다.



3 우편 및 택배

■ 국내우편

우체국을 방문해 받는 사람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한 후 규격봉투 사용 여부, 우편물 중량 등에 따라 해당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요금이 비싼 편이지만 배달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우편물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우체국에 따라 오후 8시까지 근무하거나, 토요일에 여는 곳도 있다.

• 우체국 콜센터

일반 ☎1588-1300, 02-2108-0069(외국어 가능) / 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

해외고객 ☎82-2-2128-9895 / 평일 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TIP.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기간은 3, 6, 9, 12개월 선택이 가능하며 동일 권역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자세한 정보는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제우편

외국으로 급하게 편지, 서류, 소포 등을 보내야 할 경우 우체국 국제특급우편서비스인 EMS(Express Mail Service)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국제우편물(EMS, 항공소포·등기) 발송 후 우체국 홈페이지나 콜센터 내 국제우편 행방조사실을 통해 배달조치가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은 모국으로 EMS 발송 시, 요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7. 8월 기준)

• 택배

택배란 우편물이나 상품 등을 요청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택배 서비스 업체	URL	전화번호
한진택배	www.hanjin.co.kr	1588-0011
CJ대한통운택배	www.cjlogistics.com	1588-1255
KGB택배	www.kgbils.co.kr	1577-0123
로젠택배	www.ilogen.com	1588-9988
우체국택배	http://parcel.epost.go.kr	1588-1300

4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카탈로그 등 통신방법을 매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를 말한다. 통신판매의 형태로는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이 있다.

■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물에서는 패션의류, 식품, 생필품, 가전, 여행 관련 상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대표적 쇼핑몰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하여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11번가, 쿠팡 등 다양한 소셜커머스가 있다.

TIP. 인터넷 쇼핑 이용방법

① 회원가입(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입력) → ② 로그인 → ③바로 구매 또는 장바구니(카트) 담기 → ④결제 진행 → ⑤결제수단 선택(신용·체크카드 결제, 간편결제, 현금결제, 휴대폰 결제 등) → ⑥배송료 및 배송지,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 클릭(쇼핑몰마다 결제방법이 다름)



02 금융서비스



1 은행

■ 계좌개설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거주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모든 은행거래는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금융실명제(Real Name Verification Act) 국가이기에 모든 금융 거래가 실명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리인 거래 시 금융실명 거래에서 허용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 계좌 체계와 동일하다.	- 해외에서 자금을 송·수금하여 국내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 환전한 자금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 내국인 계좌와 상이한 점은 주식 양도 시 이익금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자배당소득세 발생 시 해당 국가와 조세 협약된 세율로 세액을 결정한다.	-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은행 원화/외화 계좌 사용 등을 선택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송금

송금은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연간 미화 5만 달러(송금+환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송금 자금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취득 소득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수수료와 제한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다.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증명 서류
- 외국은행 계좌로 이체 시 : 전신환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 수신인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및 지점명 등을 영어로 쓰면 된다.

■환전

외국환이나 여행자 수표는 한국의 모든 외국환 거래 은행과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1회 입국에 1만 달러까지 환전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변동한다.

TIP. 외국환 관리 규정(Foreign Exchange Regulation)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외국환 거래를 하는 데 다음의 외국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원화 매입 시

국내 반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에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 달러 범위 내에서 외화 매각 및 원화 매입이 가능하다.

■외화 매입 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본인이 매각한 외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국내에서 외화를 매각한 기록이 없을 경우 신고 없이 최고 1만 달러까지 여행 경비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는 해외 송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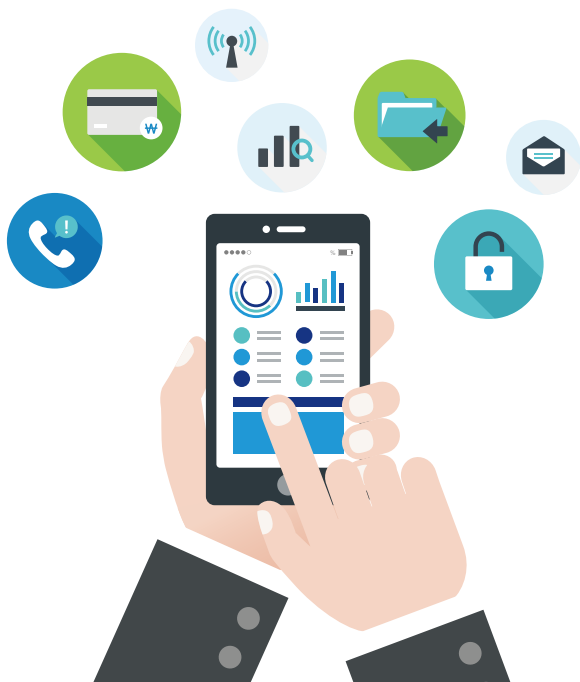
- KEB하나은행 ☎1599-1111(외국어상담은 8번 누르기) / www.kebhana.com [한, 영, 일, 중, 베]
- 우리은행 ☎1588-5000(외국인전용 1599-2288) / www.wooribank.com [한, 중, 일, 필, 베, 몽]

■인터넷 뱅킹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상담을 통해 공인인증서 및 개인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안카드 분실 시 금융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 신용카드

- 발급자격 :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각각의 발급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에게만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 발급방법 및 구비서류 :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회원가입 신청서(사진 포함), 외국인등록증, 필요 시 소득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가 있는데 카드사와 은행에 따라 청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 연회비 :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로 회원의 카드 발급월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된다.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서비스 수수료로 구분되며(가족카드, 법인카드 등 제외), 기본 연회비는 소지 카드 매수에 관계없이 연 1회만 청구되고, 제휴 서비스 수수료는 보유 카드 별로 청구된다.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저 금액 이상을 예금하고 그 금액만큼을 한달 사용한도로 정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카드 한도액만큼의 예금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송금 가능한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은 1년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송금을 원할 경우, 고용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세 납입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 금액 내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한국 브랜드 휴대폰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11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의 70%는 GSM과 DCMA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한국에서도 유심(USIM)칩만 구입해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세금정보와 배송조회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우선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 국내 반입 허용 물품인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물품인 경우 우편료 포함 15만원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품목별로 다르며, 물품 배달 시 배달원을 통해 지불합니다. 도서상품은 관세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관세청(<http://english.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생활안내

여가 생활



- 01 서울의 공원
- 02 스포츠 시설
- 03 문화재 및 문화시설
- 04 서울 관광
- 05 서울의 전통시장
- 06 나라별 마트
- 07 자원봉사 활동
- + Q&A

01 서울의 공원

**1 한강시민공원**

한강을 중심으로 각 지구별 한강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강서, 양화,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독섬, 잠실, 광나루지구 이렇게 총 11곳이다.

- 한강사업본부
<http://hangang.seoul.go.kr>

**2 월드컵공원**

서울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2002한·일월드컵 개최 및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대표 공원인 평화의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렇게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 문의 : 02-300-5500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3 올림픽공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체육, 문화예술,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5호선 올림픽공원역
 8호선 몽촌토성역
- 문의 : 02-410-1114
www.olympicpark.co.kr



4 선유도공원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생해 조성된 생태공원이자 물공원이다.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경물놀이터 등이 있어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다.

•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9호선 선유도공원역

• 문의 : 02-2631-9368



5 서울숲

2005년 문을 연 서울숲은 과거 독섬체육공원 일대를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속 숲으로 조성한 곳이다. 높은 나무들 사이로 야외무대, 광장, 인공연못 등이 자리하고 있다.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독섬로 273

 분당선 서울숲역

• 문의 : 02-460-2905

<http://seoulforest.or.kr>



6 송파나루공원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 조성한 공원으로 석촌호수공원이라고도 한다. 공원 주변으로 놀이공원, 백화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을 비롯한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136

 2·8호선 잠실역

 8호선 석촌역

• 문의 : 02-2147-3380



※ 이 밖에도 서울 시내에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한])에서 공원 정보를 제공한다.

02 스포츠 시설



1 체육센터

서울에는 구마다 체육센터가 있다. 체육센터는 종합 스포츠 시설로 근력 및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기구를 갖추고 있다. 체육센터마다 차이는 있으나 피트니스 교실을 비롯해 수영, 농구, 요가, 배드민턴, 검도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 체육시설 예약

체육시설 사용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홈페이지(<http://yeyak.seoul.go.kr> [한,영])를 통해 간단히 예약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강좌, 대관·대여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3 문화재 및 문화시설



1 주요 궁궐

서울 시내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4대 주요 궁궐이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으로 모두 서울 중심에 위치한다. 시청, 광화문, 인사동 등에 인접하여 궁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명칭	위치 및 연락처
경복궁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3호선 경복궁역 - 문의 : 02-3700-3900, www.royalpalace.go.kr [한,영]
창덕궁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3호선 안국역 - 문의 : 02-3668-2300, www.cdg.go.kr [한,영]
덕수궁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97  1·2호선 시청역 - 문의 : 02-771-9951, www.deoksugung.go.kr [한,영]

명칭	위치 및 연락처
창경궁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4호선 혜화역 - 문의 : 02-762-4868, http://cgg.cha.go.kr [한,영,중,일]
종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1·3·5호선 종로3가역 - 문의 : 02-765-0195, http://jm.cha.go.kr [한,영,중,일]

2 공연

■ 서울에는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크고 작은 공연전문시설이 있다. 공연장에서는 전통문화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대학로'라 불리는 종로구 혜화동 일대는 소극장이 밀집해 있어 매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일부 공연의 경우 영어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 서울에는 전문 공연장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공연이 자주 열린다. 길거리 공연의 메카로 통하는 홍대 주변에서는 버스킹을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홍대 일대는 밤이 되면 춤과 음악을 즐기는 젊은 클러버들의 열기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 온라인 공연 예매 서비스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www.visitseoul.net) [한, 영, 중, 일]에서 공연 및 영화 정보를 검색하고 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3 미술관 및 박물관

서울에는 한국 역사, 한국전통문화 등 주제별로 설립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회를 비롯해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 미술관

명칭	위치정보 및 연락처
 서울시립미술관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1·2호선 시청역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토·일·공휴일 : 10:00~19:00 ※동절기(11~2월) 10:00~18:00 • 문의 : 02-2124-8800 http://sema.seoul.go.kr [한,영,중,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7호선 중계역·하계역 •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토·일·공휴일 : 10:00~19:00 ※동절기(11~2월) 10:00~18:00 • 문의 : 02-2124-5248~9 http://sema.seoul.go.kr/bukseoul [한]

명칭	위치정보 및 연락처
 국립중앙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4호선 이촌역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문의 : 02-2077-9000, www.museum.go.kr [한,영,중,일]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4호선 이촌역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문의 : 02-2077-9000, www.museum.go.kr/site/child [한]
 국립국악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3호선 남부터미널역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 문의 : 02-580-3130, www.gugak.go.kr [한]

명칭	위치정보 및 연락처
 국립한글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4호선 이촌역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문의 : 02-2124-6200 www.hangeul.go.kr [한,영,중,일]
 국립민속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문의 : 02-3704-3114 www.nfm.go.kr [한,영,중,일,독,불,스페인]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문의 : 02-3704-4540 www.kidsnfm.go.kr [한,영]
 국립고궁박물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3호선 경복궁역 • 휴관일 : 2017년 1월 1일부터 휴관 없이 운영 • 문의 : 02-3701-7500 www.gogung.go.kr [한,영,중,일]
 국립어린이과학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호선 혜화역 • 문의 : 02-3668-2200 www.ssm.go.kr [한]

4 영어 자막 영화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씨네인코리아 홈페이지(<http://cineinkorea.com>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전통예술교실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체험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	교육주제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통주연구소	전통주	종로구 지하문로 62	www.ktwine.or.kr [한]
예지원	예절교육	중구 장충단로 72	www.yejiwon.or.kr [한]
삼청각	식문화체험	성북구 대사관로 3	www.samcheonggak.or.kr [한, 영, 중, 일]
궁중음식연구원	식문화체험	종로구 창덕궁5길 16	www.food.co.kr [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산사체험	종로구 우정국로 45	www.templestay.com [한, 영, 중, 일]

6 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대출기간은 도서관이나 대출 자료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할 때 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문의 : 02-535-4142, www.nl.go.kr



■ 이용증 발급 절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규 발급자



이용증 발급실에서 본인확인

준비물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이용증 발급

7 축제

서울에서는 연중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계절별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다.

계절	축제명	위치	홈페이지
봄	서울드럼페스티벌	시청 광장	www.seouldrum.go.kr [한]
	응봉산 개나리축제	성동구 응봉동	http://sd.go.kr [한, 영, 중, 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영등포구 여의서로 일대	http://tour.ydp.go.kr [한, 영, 중, 일]
여름	연등회(연등축제)	종로 조계사	www.lif.or.kr [한, 영, 중, 일, 불, 스페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월드컵경기장	www.seoulfringefestival.net [한]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 11개 한강지구 일대	http://hangang.seoul.go.kr/project2017 [한, 영, 중, 일]
가을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시 중심 일대	www.festivalseoul.or.kr [한, 영, 중, 일]
	이태원 지구촌축제	이태원	www.itaewon.or.kr [한]
	서울세계불꽃축제	여의도 한강공원	www.hanwhafireworks.com [한]
겨울	하늘공원 해맞이행사	하늘공원	http://worldcuppark.seoul.go.kr [한]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한마당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한, 영, 중, 일, 독, 불, 스페인]
	남산골 세시맞이 축제	남산골 한옥마을	www.hanokmaeul.or.kr [한]

04 서울 관광



1 서울시티투어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인기 관광명소와 쇼핑물 등을 테마별로 묶어 하루 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순환 운행한다. 티켓을 구매하면 1일 동안, 횡수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투어코스, 이용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티투어버스 홈페이지

(www.seoulcitytobus.com [한, 영, 중, 일])를 참조.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www.visitseoul.net)나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 [한, 영, 중, 일, 불, 러, 스페인, 태국])에서 서울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 서울의 전통시장



1 남대문시장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대문시장은 약 1만개의 점포가 운집해 있는 서울의 관광명소이다. 의류를 비롯해 액세서리, 주방용품, 민속공예, 식품, 잡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1,7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한국은행, 정동길, 명동, 남산타워, 남산한옥마을 등과 가까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지하철 4호선 화현역에서 가깝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남대문시장 홈페이지(www.namdaemunmarket.co.kr)를 참고하면 된다.



2 통인시장

약 80개 점포로 구성된 통인시장은 음식관련 점포가 가장 많고 채소와 과일, 생수산물, 의류 등이 시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도시락카페 통(通)'을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업전으로 교환한 후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해 도시락카페에서 먹는 형태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가깝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통인시장 홈페이지(<https://tonginmarket.modoo.at>)를 참고할 것.



3 망원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시장은 일반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채, 과일, 생선, 생필품 이외에도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한다. 30여 개 점포가 있으며,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가깝다.



4 광장시장

천(Fabric)은 물론 한복, 여성의류, 의류부자재, 수입구제, 침구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이다.

전통 한복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면 광장시장에 한번쯤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쇼핑 후에는 일명 마약김밥이라 불리는 '꼬마김밥', 녹두를 갈아 만든 녹두빈대떡과 막걸리 등 광장시장의 먹거리들을 꼭 먹어보자.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가깝다.

길 안내 및 시장 영업시간 등은 광장시장 홈페이지(www.gjmarket.org)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5 노량진 수산시장

한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른 아침에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수산물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입찰경쟁을 거쳐 각지로 분산된다. 그래서 더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눈으로 구경하는 즐거움까지 있다. 지하철1·9호선 노량진역에서 가깝다. 운영시간 등은 노량진수산시장 홈페이지(www.susansijang.c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6 경동시장

경동시장은 한약재의 70%가 유통되는 곳이다. 6·25전쟁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농민들이 농산물, 채소, 임산물들을 생산·채취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 일대에 분포한 서울약령시, 경동신시장, 경동구시장, 한솔동의보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약령시에서는 한약재가 주로 거래되고 광성상가와 경동신시장 등에서는 제수용품, 인삼, 벌꿀, 잡곡, 야채 등이 거래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가깝다.

자세한 정보는 경동시장 홈페이지(www.kyungdongmart.com)를 참고하면 된다.



06 나라별 마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지 서울에도 나라별 식품을 파는 전문 마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 더없이 편리하다.

1 중국

명칭	위치
대림동 차이나타운	2·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연남동 차이나타운	경의중앙선, 공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건대 차이나타운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

※ 서울에는 중국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차이나타운 골목마다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마트들이 있어 손쉽게 원하는 재료를 구할 수 있다.

2 일본

다양한 일본 식품과 식자재를 판매하는 모노마트는 반포서래점, 이촌점, 영등포점, 한남점 등 서울에만 10개의 매장이 있다. 자세한 매장 위치와 제품 정보는 모노마트 홈페이지(www.monolink.kr [한])에서 볼 수 있다.



3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식자재는 서울 곳곳에 있는 아시아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4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식자재는 일명 '중앙아시아 거리'로 불리는 중구 광희동 '동대문 실크로드'에서 찾을 수 있다.



5 이슬람 음식

■ 할랄 마트

마트명	소재지	전화번호
Halal Mart KOREA	마포구 마포대로 143	070-7777-4004
International Super	용산구 보광로60길 14	02-790-4264
National Foods Mart	용산구 우사단로 39	02-792-0786
Foreign Food Mart	용산구 우사단로 36	02-793-0082
Foreign Food Mart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02-798-8611
National Food Mart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4	02-790-6547

■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음식 종류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수준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무슬림이 이용하기 적합한 식당 유형을 할랄인증, 자가인증, 무슬림 프렌들리, 포크 프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라는 분류제 사업을 펼쳤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위치, 영업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출판한 〈Muslim-Friendly Restaurants in Korea〉 가이드북과 무슬림친화레스토랑 분류제 홈페이지(www.mfr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는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원한다면 외국인들도 아래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명칭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 [한, 영, 중]	02-2075-418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http://volunteer.seoul.go.kr [한]	02-776-8473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한]	1522-3658

※ 이 밖에도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한]), 환경재단(www.greenfund.org [한]) 등 다양한 활동 분야가 있다.



서울에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있나요?



난지캠핑장, 양재 시민의숲, 중랑캠핑숲에서 바비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지캠핑장은 난지캠핑장 홈페이지(www.nanjicamp.com [한, 영])에서 예약 가능하며, 양재 시민의숲, 중랑캠핑숲은 서울의 산과 공원(<http://parks.seoul.go.kr>)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동호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구성된 동호회 즉,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산, 검도, 댄스,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드, 레이싱 등 스포츠동호회를 비롯해 비트박스, 뜨개질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내국인과 함께하는 동호회도 많습니다. 동호회 참여에 관한 문의는 서울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는 '소모임' 앱 등을 이용해 원데이클래스, 정기강좌 수강 등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생활안내

행정



- 01 국제결혼
- 02 국제이혼
- 03 출생 및 사망신고
- 04 인감
- 05 세금
- 06 금연정책
- 07 반려동물
- 08 법과 질서
- + Q&A

01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 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결혼 후 법률 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및 상거소지법 및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국제결혼 후 국적

- **한국인** : 한국인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없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일정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귀화 및 영주권 자격을 얻게 된다.
- **외국인 간** :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형별 혼인신고 절차

필요서류는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형	필요서류	신고기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①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 중국인의 경우 미재혼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호구부 •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 후 구청 방문 ② 혼인신고서 1부(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것, 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한국관청 (서울시내 구청)
	■ 외국에 먼저 혼인신고 된 경우 필요 서류 ① 혼인증서(혼인 거행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본) ②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③ 혼인신고서 1부(혼인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된 것,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④ 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국가의 신고 방법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 해당 관청(구청)과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해당관청(대사관 등)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 또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려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유형	필요서류	신고기관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거한다. · 외국인 간의 혼인 시 각 나라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성립조건 구비증명서와 신분증, 증인 2인의 인적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수리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관청 (주소지 관할 구청)

※결혼비자신청 : 비자신청 전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구되는 서류는 국적·시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면 된다.

3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중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프로그램 이수

고시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국제재판상 국제 이혼이 있다.

■ 협의상 국제이혼

-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 또한 국제사법에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 재판상 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글로벌센터 무료법률상담 : 평일 오후 2시~5시, ☎02-2075-4180

03 출생 및 사망신고



1 출생신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 비자신청 시 공통 서류 : 부모의 신분증, 대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사진(2매), 수수료

(비자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2 사망신고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부모,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국으로 송환 시 필요 서류

•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항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 → 항공화물운송장 발급 → 항공사에 인도 필요 문서를 제출(사체인도서 혹은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

• 화장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기내 반입 보안검색 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사관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반출 건에 대해서는 이 용하는 항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 한다.

04 인감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계약 등의 재산권 행사, 권리위임, 고소와 같은 법적 활동을 하는 데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인감신규등록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록할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구청(외국인등록증 주소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 인감도장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한글인감도 가능하며 영문인감의 경우 표기가 어려울 시 성을 꼭 포함시키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 가능하다.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7mm×30mm를 넘지 못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외국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이 필요하다. 신분증상의 체류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인감발급이 불가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05 세금



한국의 세금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청(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서울시 세무과(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세금을 담당한다.

1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과세기간(매년 1. 1 ~12. 31) 동안의 근로 소득을 종합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신고내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최종 산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 환급 및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합계액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연말정산절차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을 전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신청서와 소득공제자료(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용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 방송출연 사례비 등) 또는 사업소득(학원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받는 강의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한 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원천징수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 납부금액이 있어 환급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7월 1일(국세), 8월 20일(지방소득세) 전후 요청한 통장 계좌로 지급된다.

3 외국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원어민 교수(교사)에 대한 비과세·면제

한국과 조세조약을 통해 원어민 교수(교사)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면제 조건

-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정부인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초청을 받아 방문한 원어민 교수(교사)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또 원천징수 의무자(학교)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자신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예 : 미국의 IRS, 일본의 국세청 등)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만약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면제 여부 및 조약상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조약

TIP. 세금 관할 부서

※ 국세청

www.nts.go.kr [한, 영], ☎126 [한], 1588-0560 [영]

※ 서울시 세무과

<http://etax.seoul.go.kr> [한, 영], 다산콜센터 ☎120 [한, 영, 중, 일, 몽, 베]

06 금연정책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구역 관리자 또한 흡연금지 표시판이나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금연구역(2018년 11월 현재)

■실내

-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당구장, 골프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관공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등

■실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광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 정화 구역, 하천 보행자길, 어린이 놀이터, 관광 특구, 일부 거리를 비롯해 기타 흡연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
(금연구역은 구마다 다를 수 있음)



07 반려동물



1 등록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등록 예약을 할 수 있다. 고양이의 중성화(TNR)신청은 해당 구청 동물관련부서 또는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2 사망 시 처리

■ 동물병원에서 사망 시

의료폐기물로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한다.

■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 시

•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할 수 있다.

※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불법매립이 된다. 단, 본인 소유의 땅에 1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고 매립할 경우에는 불법에서 제외된다.

3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하기

• 일정한 검역 절차를 마친 경우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갈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개나 고양이의 수출검역 및 수입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한, 영]

08 법과 질서



1 민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는 즉시 정차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해야 할 내용은 ①사고가 일어난 곳 ②사상자 수·부상 정도 ③손괴한 물건·손괴 정도 ④그 밖의 조치상황이다.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색상 그 밖의 특징을 ☎112에 신고해야 한다.

■ 사고 시 응급 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을 오가는 통행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사물을 제거한다. 호흡 정지 시 심장마사지나 인공호흡 등을 실시한다.



심장정지 확인



도움 및 119신고 요청



가슴압박 30회 시행



인공호흡 2회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회복자세

※자료 : 대한심폐소생협회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형사

■ 약물남용

- 마약 등의 취급이나 사용에 있어 법적으로 그 사용 및 취급 하가를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이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 시 법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성범죄

- 성범죄에는 성매매와 같이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여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성폭력 등이 있다. 성범죄는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3 질서

-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무음으로 변환한다. 특히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휴대전화의 불빛이 공연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전원을 끈다.
-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불법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승용차 이용 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공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반려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 부부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대사관에 출생신고한 후 아이의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여권 발급 후 출생 30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이의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2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미국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요?



사망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신고서와 함께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장례가 가능한 업체정보와 본국 이송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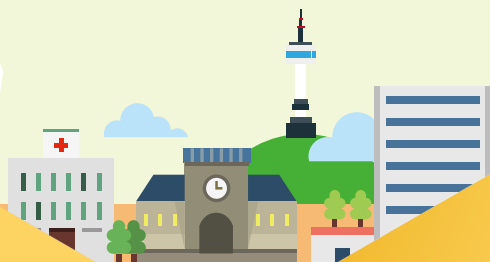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돈의 금액, 이자,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한 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가는 사람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생활안내

DIRECTORY



- 01 병원
- 02 보건소
- 03 도서관
- 04 은행
- 05 재한 외국문화원
- 06 지하철 노선도
- 07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 08 각국 주한 대사관
- 09 구청 정보
- 10 생활 유용 연락처
- 11 긴급 연락처

1 병원

병원명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 63로 10	www.cmcsungmo.or.kr/global/eng/front [영]	02-3779-2212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global/en/main.do [영]	02-2072-0505, 2890 (응급)02-2072-2473~7 010-8831-2890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http://sev.iseverance.com [한, 영, 중, 일, 러]	02-2228-5800, 5810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강남구 언주로 211	www.yuhs.or.kr/en/gan_index.asp [한, 영, 중, 일, 러]	02-2019-3600, 3690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www.amc.seoul.kr [한, 영, 중, 일, 러]	02-3010-5001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www.samsunghospital.com [한, 영, 중, 일, 러]	02-3410-0200, 0226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왕십리로 222-1	https://seoul.hyumc.com/seoul/international.do [한, 영, 중, 러]	02-2290-9553 [영] / 9579 [러] 010-6402-9550 [영] 010-6403-9550 [러] 응급 02-2290-8283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용산구 대사관로 59	www.schmc.ac.kr/seoul/international/index.do [한, 영, 중, 스페인]	02-709-9158 / 9058 응급 02-709-9119
경희대학교병원	동대문구 경희대로 28	www.khmc.or.kr/eng [한, 영, 중, 러]	02-958-9644/947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대로 222	www.cmcseoul.or.kr/examination [한, 영, 중, 일]	02-2258-5745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http://ch.cauhs.or.kr [한, 중, 영, 러, 몽골어]	02-6299-3025
건국대학교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www.kuh.ac.kr/english [한, 중, 영, 일, 러, 몽골어]	02-2030-8361

2 보건소

지역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강남구	강남구 선릉로 668	http://health.gangnam.go.kr [한, 중, 영, 일, 러]	02-3423-7200, 7199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45	http://health.gangdong.go.kr [한, 영]	02-3425-8500, 5000
강서구	강서구 공항대로 561	www.gangseo.seoul.kr/site/health/index.jsp [한, 중, 영]	02-2600-5800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 897	http://ehealth.gangbuk.go.kr [한]	02-901-7600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17	www.gwangjin.go.kr/health/index.jsp [한, 중, 영, 일]	02-450-1422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	www.gwanak.go.kr/site/health/main.do [한, 영]	02-879-7010 02-879-7117, 7642
구로구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	www.guro.go.kr/health/NR_index.do [한]	02-860-2600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http://bogunso.geumcheon.go.kr [한]	02-2627-2114 02-2627-2300, 2330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37	www.nowon.kr/health [한, 중, 영, 일]	02-2116-3115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3길 117	http://health.dobong.go.kr [한, 중, 영, 일]	02-2091-46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http://health.ddm.go.kr [한, 중, 영, 일]	02-2127-2365~6
동작구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www.dongjak.go.kr/healthcare/main/main.do [한, 중, 영, 일]	02-820-1423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http://health.mapo.go.kr [한, 중, 영, 일]	02-3153-9020

지역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www.seocho.go.kr/site/sh/main.do [한]	02-2155-6114 02-2155-6100~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2	http://health.sdm.go.kr [한]	02-330-1801~2
성동구	성동구 마장로23길 10	http://bogunso.sd.go.kr [한, 중, 영, 일, 베트남]	02-2286-7000
성북구	성북구 화랑로 63	http://bogunso.seongbuk.go.kr [한, 영]	02-2241-1749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로 326	http://ehealth.songpa.go.kr [한, 중, 영, 일]	02-2147-2000, 3455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로 123	www.ydp.go.kr/health/main.do [한, 중, 영, 일]	02-2670-3114, 3000
양천구	양천구 목동서로 339	www.yangcheon.go.kr/health/health/main.do [한, 중, 영]	02-2620-3912, 3000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http://health.yongsan.go.kr [한]	02-2199-8012~3, 02-2199-6300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5	http://health.ep.go.kr [한, 영]	02-351-8114
종로구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http://health.jongno.go.kr [한]	02-2148-3520
중구	중구 다산로39길 16	www.junggu.seoul.kr/health [한, 중, 영, 일, 러]	02-3396-6317
중랑구	중랑구 북화산로 179	http://health.jungnang.go.kr [한, 중, 영, 일, 베트남]	02-2094-0710 02-2094-2094, 1112~4



3 도서관

도서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도서관	중구 세종대로 110	http://lib.seoul.go.kr	02-2133-0300~1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 반포대로 201	www.nl.go.kr [한, 영]	02-535-4142
국회도서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www.nanet.go.kr [한, 영]	02-788-4211
남산도서관	용산구 소월로 109	http://nslib.sen.go.kr [한]	02-754-6545
강서도서관	강서구 등촌로51 나길 29	http://gslib.sen.go.kr/gslib_index.jsp [한]	02-3219-7000
양천도서관	양천구 목동서로 113	http://yclib.sen.go.kr [한]	02-2062-3900
고척도서관	구로구 고척로45길 31	http://gcclib.sen.go.kr [한]	02-2615-0524~0528
마포 평생학습관	마포구 홍익로2길 16	http://mpllc.sen.go.kr [한]	02-2137-0000
영등포 평생학습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http://ydpplc.sen.go.kr [한]	02-6712-7500~7571
동작도서관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http://djlib.sen.go.kr [한]	02-823-6419
서대문도서관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http://sdmlib.sen.go.kr [한]	02-6948-2115
용산도서관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http://yslib.sen.go.kr [한]	02-6902-7777
종로도서관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http://jnlib.sen.go.kr [한]	02-721-0711
어린이도서관	종로구 사직로9길 7	http://childlib.sen.go.kr [한]	02-731-2300

※서울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eoul.go.kr/slibsrch/main>)에서 더 많은 도서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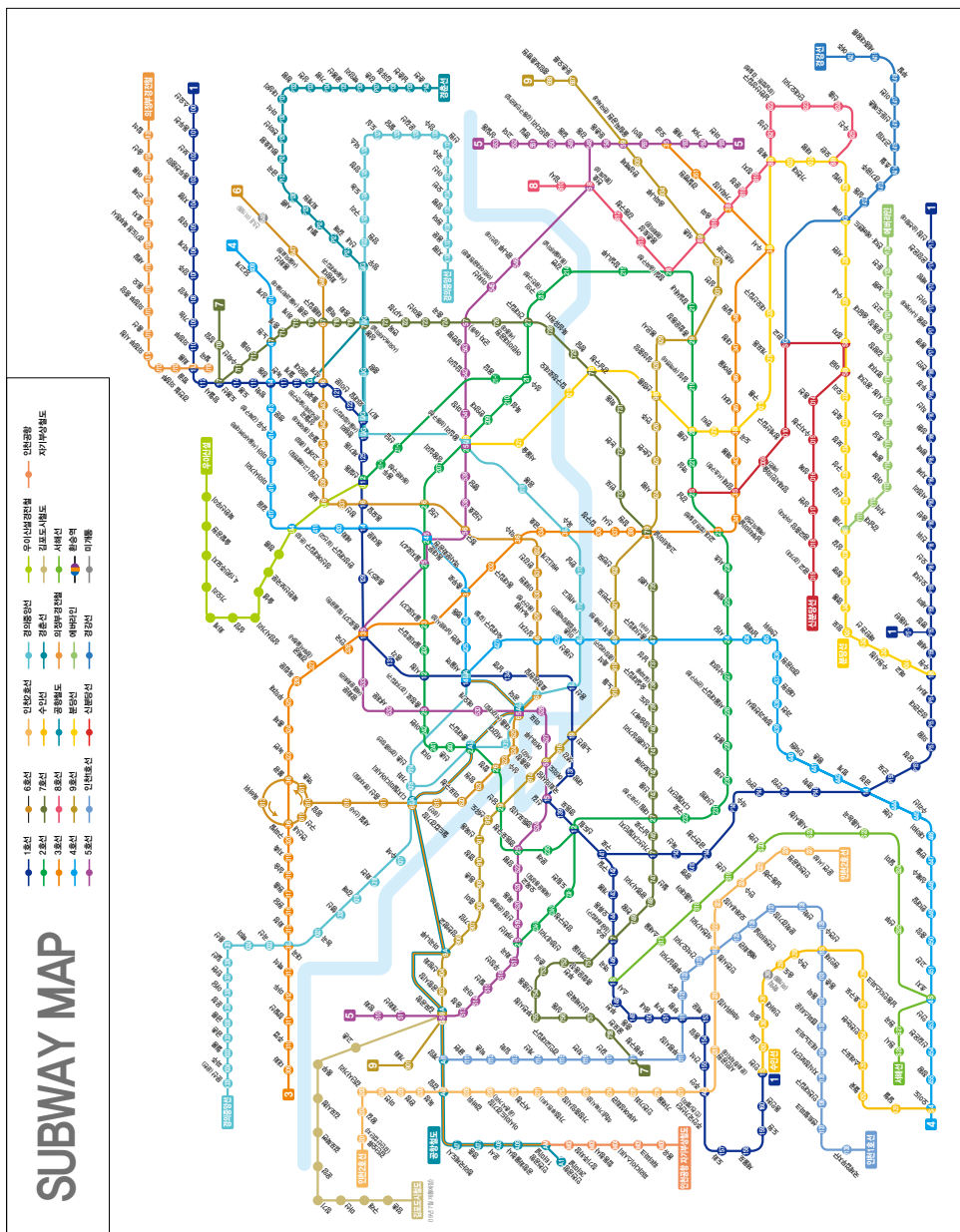
4 은행

은행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은행	www.bok.or.kr [한, 영]	02-759-4114
KB국민은행	www.kbstar.com [한, 영, 일, 중]	1588-9999 1599-4477(외국인전용)
신한은행	www.shinhan.com [한, 영, 일, 중]	1599-8000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한, 영, 일, 중, 베, 몽, 필]	1599-5000, 1588-5000 1599-2288(외국인전용)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한, 영, 일, 중, 베]	1599-1111, 1588-1111
IBK기업은행	www.ibk.co.kr [한, 영, 중, 베, 인도네시아]	1566-2566, 1588-2588
NH농협	www.nonghyup.com [한, 영]	02-2080-5114
씨티은행	www.citibank.co.kr [한, 영]	1588-7000
HSBC은행	www.hsbc.co.kr [한, 영]	1588-1770

5 재한 외국문화원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뉴질랜드교육문화원	강남구 역삼로7길 21	www.nzc.co.kr	02-3454-0059
러시아문화원	종로구 인사동4길 18	www.russiacenter.or.kr	02-6262-8222
몽골 울란바토르문화진흥원	광진구 광장로 1	www.mongolcenter.org	02-446-4199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용산구 대사관로11길 37	http://kr.saudiculture.kr	02-744-6471
서울 독일문화원	용산구 소월로 132	www.goethe.de/ins/kr	02-2021-2800
서울 프랑스문화원	종구 칠레로 42 10	www.institutfrancais-seoul.com	02-317-8500
아제르바이잔문화원	서초구 강남대로 305	-	02-598-9010
이스라엘문화원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www.ilculture.or.kr	02-525-7301
이stanbul문화원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2	www.turkey.or.kr	02-3452-8182
이탈리아문화원	용산구 한남대로 98	www.iicseoul.esteri.it	02-796-0634
일본문화원	종로구 율곡로 64	www.kr.emb-japan.go.jp	02-765-3011
중국문화원	종로구 사직로 8길 23-1	www.cccseoul.org	02-733-8307
영국문화원	종구 서소문로 11길 19	www.britishcouncil.kr	02-3702-0600

6 지하철 노선도



7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글로벌센터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 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	http://global.seoul.go.kr	02-2075-4180
서남권 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0202	02-2229-4900 02-2670-3800~6
동대문 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청인빌딩 7층	http://global.seoul.go.kr/dongdaemun	02-2271-9521
연남 글로벌빌리지센터	마포구 동교로 219 수성빌딩 3층	http://global.seoul.go.kr/yeonnam	02-6406-8151~3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1문화센터	http://global.seoul.go.kr/yeoksam	02-3423-7960~2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초구 서래로 28 전빌딩 3층	http://global.seoul.go.kr/seorae	02-2155-8949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이태원로 211 한남빌딩 504호	http://global.seoul.go.kr/itaewon	02-2199-8883~5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쇼팡센터 304호	http://global.seoul.go.kr/ichon	02-796-2018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구 성북로 134	http://global.seoul.go.kr/seongbuk	02-2241-6381~4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 가산로 116	http://global.seoul.go.kr/geumcheon	02-2627-2884 (2881~7)

■비즈니스지원센터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전시장 2층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1101	02-6001-7241~3

■외국인근로자센터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성동구 무학로6길 47-1	www.smwc.or.kr	02-2282-7974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금천구 가산로 129	www.gmwc.or.kr	02-868-5208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성북구 오패산로16길 23	www.sbmwc.or.kr	02-911-2884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www.shinmok.or.kr	02-2643-0808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은평구 은평로21길 14-26	nokbeon.or.kr/biz07 www.facebook.com/EP.EMWC	02-359-3410~1, 3411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강동구 성안로13길 56	www.welfarecenter.or.kr	02-478-255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 소	전화번호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4-3346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02-471-0812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37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 129길 6(번동) 2층	02-987-2567
광진구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5층	02-458-0666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김삼준다문화복합시설 3층	02-883-9383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02-869-0317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803-7747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02-979-3502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1073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3층	02-599-3260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B2	02-3142-5482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02-375-7530
서초구	1센터 :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02-576-2852
	2센터 : 서초구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 FP 202호	02-576-2853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6길 9	02-3395-9445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송파구	송파구 마천로41길 12	02-403-3844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단	02-846-5432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8길 5-7 지층	02-2699-6900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02-376-3731
종로구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02-764-3521
중구	중구 퇴계로 460, 10층	02-2254-3670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9

8 각국 주한 대사관

■아시아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네팔	성북구 선잠로2길 19	www.nepembseoul.gov.np	일~목 09:30~14:00
말레이시아	용산구 독서당로 129	www.malaysia.or.kr	월~금 09:00~11:30
몽골	용산구 독서당로 95	www.mongolembassy.com	월~금 09:30~17:30
방글라데시	용산구 장문로6길 17	www.bdembassykorea.org	월~금 09:30~16:30
스리랑카	중구 동호로10길 39	www.slembassykorea.com	월~금 09:00~17:00 토 14:00~17:00
싱가포르	중구 세종대로 136	https://www.mfa.gov.sg/content/mfa/overseasmission/seoul.html	월~금 09:00~17:30
인도	용산구 독서당로 101	www.indembassy.or.kr	월~금 09:00~17:30
인도네시아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http://kbriseoul.kr/	월~금 09:00~17:00
일본	종로구 율곡로 6	www.kr.emb-japan.go.jp	월~금 09:30~16:00
중국	중구 명동2길 27	http://kr.china-embassy.org/kor/	월~금 09:00~17:30
키르기스스탄	용산구 장문로 53	-	월~금 09:00~12:00 (수요일 제외)
태국	용산구 대사관로 42	www.thailembassy.org/seoul/ko	월~금 09:00~15:30
파키스탄	용산구 장문로9가길 39	http://pkembassy.or.kr	월~금 09:00~17:00
베트남	종로구 북촌로 123	https://vietnamembassy-seoul.org/ 전화번호 02-734-7948	월,목 09:30~17:30 화,수,금 09:00~17:30
필리핀	용산구 회나무로 80	www.philembassy-seoul.com	월~목 09:00~15:00 일 09:00~16:00
브루나이	종로구 자하문로 133	전화번호 02-790-1078	월~금 09:00~17:00
캄보디아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12	https://www.evisa.gov.kh/ 전화번호 02-3785-1041	월~금 09:00~17:00
라오스	용산구 대사관로11길 30-4	http://laosembseoul.blogspot.com 전화번호 02-796-1713/4	월~금 08:30~17:00
미얀마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전화번호 02-790-3814	월~금 08:30~17:00
우즈베키스탄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7	www.uzbekistan.or.kr	월 14:00~16:00 화,수 10:00~16:00 목,금 10:00~13:00

■ 유럽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네덜란드	중구 정동길 21-15	www.netherlandsandyou.nl	월~금 09:00~17:30
노르웨이	중구 정동길 21-15	www.norway.no/en/south-korea	월~금 09:00~16:30
덴마크	중구 한강대로 416	http://sydkorea.um.dk/ko	월~금 09:00~17:00
독일	중구 한강대로 416	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Startseite.html	월, 화(오전), 목 9:00~12:00 화(오후) 13:30~16:00 수 13:30~16:30 금 8:30~12:00
러시아	중구 서소문로11길 43	http://korea-seoul.mid.ru/	월,수,금 09:00~18:00
벨기에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3	https://diplomatie.belgium.be/en/south_korea	월~금 09:00~16:00
벨라루스	용산구 이태원로45길 51	www.belarus.or.kr	월~금 09:30~16:30
세르비아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 202호	www.seoul.mfa.gov.rs	월~금 09:00~17:00
스웨덴	중구 소월로 10	www.swedenabroad.com	월~금 09:00~17:00
스위스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0-16	www.eda.admin.ch/seoul	월~금 09:00~12:00
스페인	용산구 한남대로36길 17	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Paginas/inicio.aspx	월~목 09:00~17:00 금 09:00~15:00
슬로바키아	용산구 한남대로10길 28	전화번호 02-794-3981	월~금 09:00~17:00
아일랜드	종로구 종로1길 42	www.dfa.ie/irish-embassy/republic-of-korea	월~금 09:00~17:00
아제르바이잔	용산구 이태원로45길 63	http://seoul.mfa.gov.az	-
영국	중구 세종대로19길 24	www.gov.uk/government/world/south-korea.ko	월~목 09:00~17:15 금 09:00~17:00
오스트리아	종로구 종로1	www.bmeia.gv.at/kr/botschaft/seoul.html	월~금 09:00~12:00
이탈리아	용산구 한남대로 98	www.ambseoul.esteri.it	월~금 09:00~15:00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체코공화국	종로구 경희궁1길 17	www.mzv.cz/seoul	월~금 09:00~17:00
포르투갈	종로구 창덕궁1길 13	전화번호 02-3675-2251	월~금 09:00~17:00
폴란드	종로구 삼청로 20-1	www.seul.msz.gov.pl	월~금 09:00~16:00
프랑스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www.ambafrance-kr.org	월~금 09:00~12:00
핀란드	종로구 종로1가 1602	www.finland.or.kr	월~금 09:00~17:00
헝가리	용산구 장문로 58	http://szoul.mfa.gov.hu/kor	월~금 09:00~11:00
불가리아	용산구 한남대로 102-8	전화번호 02-794-8625	월~금 09:00~17:00
그리스	중구 청계천로 86	전화번호 02-729-1400	월~금 09:00~16:00
(로마)교황청	종로구 자하문로26길 19	전화번호 02-736-5725	월~금 09:00~13:00
루마니아	용산구 장문로 50	http://coreea-romania.com/roembass.htm	월~금 09:00~17:00
우크라이나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1	http://korea.mfa.gov.ua/ua	월~금 09:00~18:00

■북아메리카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미국	종로구 세종대로 188	https://kr.usembassy.gov/ko	월~금 09:00~11:15
캐나다	중구 청동길 21	www.korea.gc.ca	월~금 08:30~17:00

■남아메리카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중구 세종대로 73	www.embadom.or.kr	월~금 09:00~16:30
멕시코	종로구 율곡로 6	https://embamex.sre.gob.mx/corea	월~금 09:00~17:00
베네수엘라	종로구 종로 47	www.venezuelaemb.or.kr	월~금 09:30~17:00
브라질	종로구 청와대로 73	http://seul.itamaraty.gov.br	월~금 09:00~13:00
우루과이	중구 퇴계로 97	www.mrree.gub.uy	-
칠레	중구 퇴계로 97	www.coreachile.org	월~금 09:00~16:00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코스타리카공화국	중구 퇴계로 97	전화번호 02-707-9249	월~금 09:00~17:00
파라과이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	www.embaparcorea.org/korea	-
아르헨티나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전화번호 02-797-0636	-
콜롬비아	종로구 종로1	전화번호 02-720-1369	월~금 09:00~16:00
에콰도르공화국	종로구 종로 47	http://coreadelsur.embajada.gob.ec	월~금 09:30~15:30
엘살바도르공화국	중구 세종대로 55	전화번호 02-753-3432	-
과테말라	중구 을지로 30	전화번호 02-771-7582	월~금 09:00~16:30
온두라스	종로구 청계천로 11	전화번호 02-738-8402	월~금 09:00~16:00
파나마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4	전화번호 02-734-8610	월~금 09:00~17:00
페루	중구 퇴계로 97	전화번호 02-757-1735	월~금 09:00~17:00

■아프리카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가나공화국	용산구 독서당로 120	www.ghanaembassy.or.kr	월~금 09:00~16:30
가봉공화국	용산구 이태원로 239	전화번호 02-793-9575	월~금 09:00~15:00
나이지리아	용산구 장문로6길 13	www.nigerianembassy.or.kr	월~금 09:30~17:30
남아프리카공화국	용산구 독서당로 104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	월~목 08:00~16:45 금 08:00~15:30
르완다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http://rwanda-embassy.or.kr	월~금 09:00~17:00
알제리	용산구 회나무로 81	www.algerianemb.or.kr	월~금 09:00~17:00
짐바브웨	송파구 삼전로8길 12	www.zimbabwe.or.kr/rb	-
케냐	용산구 회나무로44길 38	www.kenya-embassy.or.kr	월~금 09:00~17:00
코트디부아르	중구 세종대로 55	www.cotedivoireembassy.or.kr/xe	월~금 09:30~16:30
콩고 민주공화국	영등포구 63로 32	전화번호 02-722-7958	월~금 10:00~16:00
이집트	용산구 독서당로 114	전화번호 02-749-0787	월~금 09:00~15:00
모로코	용산구 장문로 32	전화번호 02-793-6249	월~금 09:30~16:30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리비아	용산구 이태원로49길 29-2	전화번호 02-797-6001	월~금 09:30~15:00
수단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www.sudanseoul.net	월~금 09:00~16:30
튀니지	용산구 장문로6길 8	전화번호 02-790-4334	월~금 09:00~17:00

■오세아니아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뉴질랜드	중구 정동길 21-15	www.nzembassy.com	월~금 09:00~17:30
파푸아뉴기니	종로구 삼봉로 81	www.papuanewguineaembassy.kr	월~금 09:00~17:00
호주	종로구 종로 1	http://southkorea.embassy.gov.au	월~금 09:00~17:00

■중동

국가	주 소	홈페이지	근무시간
레바논	용산구 회나무로41길 5	http://www.seoul.mfa.gov.lb	월~금 09:00~15:00
아프가니스탄	용산구 독서당로 90	전화번호 02-793-3535	월~금 09:30~16:00
이란이슬람공화국	용산구 장문로 45	irn.mofa.go.kr 전화번호 02-793-7751	월~금 08:30~16:30 토 08:30~12:30
이스라엘	종로구 청계천로 11	http://embassies.gov.il	월~금 09:00~17:00 금 09:00~15:00
쿠웨이트	종로구 경희궁길 49	전화번호 02-749-3688	월~금 09:00~16:00
오만	종로구 새문안로3길 9	전화번호 02-790-2431	월~금 09:00~16:00
카타르	용산구 장문로 48	전화번호 02-798-2444	월~금 09:30~16:00
사우디 아라비아	용산구 녹사평대로 26길 37	http://embassies.mofa.gov.sa/sites/SouthKorea/AR/Pages/default.aspx	월~금 09:00~17:00
터키	중구 동호로20나길 40	http://seoul.be.mfa.gov.tr	월~금 09:00~18:00
아랍에미리트	용산구 독서당로 118	http://uae-embassy.ae/Embassies/kr	월~금 09:00~15:30

9 구청 정보

구역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야간, 공휴일 당직실)
종로구	종로구 삼봉로 43	www.jongno.go.kr [한, 영, 일, 중]	02-2148-1114 (02-2148-1111)
중구	중구 창경로 17	www.junggu.seoul.kr [한, 영, 일, 중, 러]	02-3396-4114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http://yongsan.go.kr [한, 영, 일, 중, 불, 스페인, 독, 베트남]	02-2199-6114 (02-2199-6300)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 270	www.sd.go.kr [한, 영, 일, 중]	02-2286-5114 (02-2286-5200)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17	www.gwangjin.go.kr [한, 영, 일, 중]	02-450-1114 (02-450-13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www.ddm.go.kr [한, 영, 일, 중]	02-2127-5000 (02-2127-4000)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	www.jungnang.go.kr [한, 영, 일, 중]	02-2094-0114 (02-2094-2094, 1112~4)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www.seongbuk.go.kr [한, 영, 일, 중]	02-2241-3114
강북구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www.gangbuk.seoul.kr [한, 영, 일, 중]	02-901-6114 (02-901-6111~3)
도봉구	도봉구 마들로 656	www.dobong.go.kr [한, 영, 일, 중, 베트남]	02-2091-2120, (2091)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37	www.nowon.kr [한, 영, 일, 중]	02-2116-3114 (02-2116-3000, 3301)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6	www.ep.go.kr [한, 영, 일, 중]	02-351-6114 (02-351-6041~5)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www.sdm.go.kr [한, 영, 일, 중]	02-330-1114 (02-330-1599, 1300)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www.mapo.go.kr [한, 영, 일, 중]	02-3153-8115 (02-3153-8100)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105	www.yangcheon.go.kr [한, 영, 중]	02-2620-3114 (02-2620-3000)

구역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야간, 공휴일 당직실)
강서구	강서구 화곡로 302	www.gangseo.seoul.kr [한, 영]	02-2600-6114 (02-2600-6330)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45	www.guro.go.kr [한, 영, 중]	02-860-2114, 2127~9 (02-860-2330)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www.geumcheon.go.kr [한, 영, 일]	02-2627-2114 (02-2627-2300, 2330)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로 123	www.ydp.go.kr [한, 영, 일, 중]	02-2670-3114 (02-2670-3000)
동작구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www.dongjak.go.kr [한, 영, 일, 중]	02-820-1114 (02-820-1119)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	www.gwanak.go.kr [한, 영]	02-879-5000 (02-879-6000, 7000)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www.seocho.go.kr [한, 영, 일, 중, 불]	02-2155-6114 (02-2155-6100~3)
강남구	강남구 학동로 426	www.gangnam.go.kr [한, 영, 일, 중, 러시아]	02-3423-5114 (02-3423-6000~3)
송파구	송파구 올림픽로 326	http://www.songpa.go.kr [한, 영, 일, 중]	02-2147-2000 (02-2147-2200~4)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25	www.gangdong.go.kr [한, 영]	02-3425-7200 (02-3425-5000)

10 생활 유용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가스 사고 신고	1544-4500
전기 고장 신고	123
수도 고장 신고	121
전화번호 안내	114
일기예보 안내	131

기관	전화번호
교통정보 안내	1333
보건복지콜센터	129
학교폭력근절	117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센터	1577-0199

11 긴급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경찰청	112
다산콜센터	120
한국관광공사 안내센터	1330
언어문화봉사단 한국BBB운동	1588-5644
사이버테러	118

기관	전화번호
119 안전신고센터	119
출입국 종합 안내센터	1345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철도 범죄 신고	1588-772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출판물명 | 서울생활안내

초판 1쇄 발행일 | 2017년 12월

2쇄 발행일 | 2018년 12월

판명과 판수 | 2쇄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편집인 |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발행처 | 서울특별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제작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화 | 02-2075-4180

디자인·인쇄 | (주)티앤아이미디어

저작권 | copyright© 서울특별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 비매품

ISBN | 979-11-6161-134-1

출판일련번호 | 여성911-0012



비매점/ 무료



9 791161 011341
ISBN 979-11-6161-134-1